

# 주요국의 보세공장제도 비교연구

2021. 12.

정재호 · 김미정 · 노영예



# 주요국의 보세공장제도 비교연구

2021. 12.

정재호 · 김미정 · 노영예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김 미 정 연구원

노 영 예 선임연구원

# 목 차

I. 서론	1
II. 보세공장제도 개관	4
1. 보세공장제도 관련 국제규범	4
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4
나. 개정교토협약	12
2. 우리나라의 보세공장제도	20
가. 개요	20
나. 관련 규정	28
다. 보세공장제도	29
III. 주요국의 보세공장제도	40
1. 미국의 보세공장제도	40
가. 관련 규정	40
나. 보세공장제도	43
2. 일본의 보세공장제도	52
가. 관련 규정	52
나. 보세공장제도	53
3. 대만의 보세공장제도	62
가. 관련 규정	62
나. 보세공장제도	65

4. 인도의 보세공장제도 .....	77
가. 관련 규정 .....	77
나. 보세공장제도 .....	80
IV. 국제비교 .....	86
1. 업종제한 .....	86
2. 원재료 및 작업의 범위 .....	87
3. 화물관리 .....	88
4. 장치기간 .....	89
5. 관세담보 및 기타 .....	89
V. 소결 .....	91
1. 업종제한 .....	91
2. 원재료 및 작업의 범위 .....	92
3. 관세담보 .....	94
4. 기타 .....	95
가. 시설재 감면규정의 보완 .....	95
나. 덤핑 관련 보세공장 규정의 보완 .....	97
참고문헌 .....	99

## 표 목차

〈표 II-1〉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체계 .....	14
〈표 II-2〉 우리나라의 보세공장제도 변화 .....	26
〈표 II-3〉 보세공장 업체 수 .....	27
〈표 II-4〉 보세공장 업종별 현황 .....	28
〈표 II-5〉 보세공장 수출 현황 .....	28
〈표 III-1〉 보세제도 관련 미국 연방 관세규정(19 CFR Part 19)의 구성 .....	41
〈표 III-2〉 미국 보세구역의 유형 .....	45
〈표 III-3〉 대만 보세공장 관련 규정 체계 .....	65
〈표 III-4〉 인도 보세창고(제조 및 기타작업) 관련 규정 체계 .....	79
〈표 IV-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세공장제도 비교 .....	90

## 그림 목차

[그림 Ⅲ-1] 내국물품 반입 신청서 .....	48
----------------------------	----

# I. 서론

-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의미함
  - 원재료나 부자재를 국내 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완제품을 제조·가공한 후 수출하게 되면 원재료나 부자재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부담과 번잡한 통관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보세공장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함
  -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공장 반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원재료 해당 범위를 넓혀 왔으나 여전히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음
  -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해당 보세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구·시험용 제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비롯하여 보세공장에서 추가 보세작업이 필요한 원재료에 대해서도 반입을 허용하였음
    - 선박 수리를 위해 입항한 외국 선박 적재 연료유도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해옴
    - 그러나 제조되는 선박의 시운전 유류의 원재료 포함 여부에 대한 논쟁<sup>1)</sup>은 2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글라스웨이퍼의 원재료 해당 여부<sup>2)</sup>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음

---

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심-2020-전-0270[심판]),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search/search\\_inspect\\_view.jsp?log\\_docu\\_kind=%EC%8B%AC%ED%8C%90%EC%B2%AD%EA%B5%AC&log\\_taxitem\\_id=99&log\\_taxitem\\_nm=%EA%B8%B0%ED%83%80&log\\_weblog\\_searchModeUrl=search\\_inspect\\_view.jsp?log\\_docu\\_kind=%EC%8B%AC%ED%8C%90%EC%B2%AD%EA%B5%AC&search\\_Mode=total&log\\_taxitem\\_id=99](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search/search_inspect_view.jsp?log_docu_kind=%EC%8B%AC%ED%8C%90%EC%B2%AD%EA%B5%AC&log_taxitem_id=99&log_taxitem_nm=%EA%B8%B0%ED%83%80&log_weblog_searchModeUrl=search_inspect_view.jsp?log_docu_kind=%EC%8B%AC%ED%8C%90%EC%B2%AD%EA%B5%AC&search_Mode=total&log_taxitem_id=99) 검색일자: 2020. 4. 23.

2) Forwarder kr: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10\\_1&wr\\_id=8028&device=pc](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10_1&wr_id=8028&device=pc) 검색일자: 2022. 2. 7.

- 특히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업종제한, 관세담보 등의 문제를 포함한 보세공장에 대한 각국의 최근 법 개정 동향 및 해당 제도를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관세부과 유예를 통한 수출주력 산업 지원 및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보세공장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요국의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인 미국,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춘 일본, 수출가공업이 발달한 대만을 비롯하여 제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보세창고에서 제조 및 기타 작업을 허용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 중인 인도를 선정하여 조사하였음
  - 보세공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관세 환급, 자유무역지역과 함께 보세공장의 특징을 간략히 비교, 요약하여 다루는 방식이었으며 특히 인도의 경우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김동엽 외(2003)에서는 각국의 수출지원제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관세환급제도 존속 여부 및 보세공장제도,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의 통합 등에 대해 논의 및 조사하였음
  - 김영춘·최해범(2011) 등에서는 보세공장 특히 대상 확대를 위해 생명공학산업 등 신성장·신생산업 부문 보세공장 허용 및 보세화물 관리 효율화를 위한 단일보세공장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음
  - 이명구(2018)에서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관리의 이원화, 장외작업 공정순서에 따른 반출입 및 보세운송 신고,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받는 수출업체(보세공장 등 운영인)가 공급 즉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였음
- 본 보고서에서는 보세공장제도에 대한 내용 중 최근에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분의 내용 또는 비교는 생략하였음
  - 보세공장 외 작업 신청 절차 개선,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기간 및 완료보고, 원료별·제품별 원료과세 포괄적용 대상 명확화 등의 내용은 제외하였음

-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특히 또는 지정된 지역으로 외국물품이 보세상태로 반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함
  - 그러나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은 보세구역의 종류에 따라 세관의 통제하에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차이점이 있어 연구 범위를 보세공장으로 한정하였음
  
- 본 연구는 제I장 서론을 포함하여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II장 보세공장제도 개관에서는 WTO 보조금협정 및 개정교토협약에서 보세공장과 관련된 규범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보세공장제도에 대해 조사하였음
    - 우리나라의 보세공장제도는 ① 개요, ② 관련 규정 및 ③ 보세공장제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음
  - 제III장 주요국의 보세공장제도는 관련 규정 및 보세공장제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음
    - 보세공장제도에 대해서는 ① 허가요건 및 허용업종 ② 원재료 및 작업의 범위 ③ 화물관리 및 장치기간 ④ 관세담보 및 기타 사항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조사하였음
  - 제IV장 국제비교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대만, 인도의 보세공장제도를 비교하였음
  - 제V장 소결에서는 주요국의 보세공장제도 비교 연구를 요약하며 우리나라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안점을 기술하였음

## II. 보세공장제도 개관

### 1. 보세공장제도 관련 국제규범

#### 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1)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내용

- 보조금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도입되기 전까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제6조, 제16조 및 동경라운드에서 채택된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었음
- GATT 제6조에서는 다른 계약당사자의 영토 내로 수입되는 계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에 대해 특정상품의 운송에 대한 특별보조금을 포함하여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동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결정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의 추산액과 동일한 금액을 초과하여 어떠한 상계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상계관세는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여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별관세를 의미함
- GATT 제16조에서는 보조금에 대해 다음의 경우 서면으로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체약당사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영토로부터 상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자신의 영토로의 상품의 수입을 감소시키도록 운영되는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을 포함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동 보조금 지급의 정도와 성격에 대해 통보해야 함
  - 자신의 영토로 수입되거나 자신의 영토로부터 수출되는 상품 또는 상품들의 물량에 대하여 동 보조금 지급이 미칠 것으로 추산되는 효과에 대해 통보해야 함
  - 동 보조금 지급을 필요하게 하는 상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해야 함
    - 보조금 지급에 의하여 다른 체약당사자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이 야기되거나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체약당사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동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가능성에 대하여 다른 당해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 또는 체약당사자단과 논의해야 함
- 그러나 규제대상 보조금의 범위와 상계조치 발동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각국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sup>3)</sup>
-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상계관세제도를 자국 산업의 보호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 증가하였음
  - 보조금의 정의, 절차 등과 같은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 특정 정부조치가 불법 보조금 지원에 해당하는지 혹은 정부의 합당한 경제개발정책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발발하면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련된 현행 GATT 규정 및 동경라운드 협정 개선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주요국들은 협정 개정을 추진하였음<sup>4)</sup>

3)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311253&srchFr=&srchTo=](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311253&srchFr=&srchTo=) 검색일자: 2021. 12. 28.

4)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311253&srchFr=&srchTo=](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311253&srchFr=&srchTo=) 검색일자: 2021. 12. 28.

□ 따라서 1994년 4월 WTO 설립 협정의 부속 협정으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채택되었음<sup>5)</sup>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11부 32개조 및 7개 부속서로 구성되었음
  - 보조금의 정의, 특성성,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및 허용보조금의 내용, 상계 조치 절차, 상계관세의 부과 및 징수,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 통보 및 감시, 개도국 우대, 분쟁해결, 최종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기존 보조금 및 상계조치 규정에 비해 보조금의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한 선진국의 입장이 대폭 반영되었음
- 여태까지 불명확했던 보조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운용을 대폭적으로 규제하게 되었음
- 상계조치 또한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중재 및 패널 결정의 이행을 의무화함으로써 명료성 및 일관성을 강화하였음
- 매년 허용보조금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3년마다 회원국의 보조금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규정하여 다자 차원의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음

□ 보조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sup>6)</sup>

-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협정에서는 정부라 칭함)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 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대출보증)을 수반하는 경우
  -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를 들어, 세액 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

5)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311253&srchFr=&BsrchTo=&BsrchWord=&BsrchTp=&Bmulti\\_itm\\_seq=0&Bitm\\_seq\\_1=0&Bitm\\_seq\\_2=0&Bcompany\\_cd=&Bcompany\\_nm=&page=36](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311253&srchFr=&BsrchTo=&BsrchWord=&BsrchTp=&Bmulti_itm_seq=0&Bitm_seq_1=0&Bitm_seq_2=0&Bcompany_cd=&Bcompany_nm=&page=36)  
 검색일자: 2021. 12. 29.

6)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제1조

- 따라서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세공장의 경우 보조금 정의에 해당되는 재정적 유인에 따른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 보조금 지급 주체로 규정하는 정부의 범주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정부의 범주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주 또는 도 단위의 지방 정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부속서 1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주 58에 따르면 조세 환불, 할인, 경감, 환급 및 수입과징금의 면제, 유예 허락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 제도는 WTO의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sup>7)</sup>
  - 보조금의 정의에 대한 주 1에서는 1994년도 GATT 제16조(제16조 주석)의 규정 및 이 협정의 부속서 1부터 3까지의 규정<sup>8)</sup>에 따라 국내 소비년도의 동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를 수출품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발생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만큼 그러한 관세 또는 조세를 경감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부속서 1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주 58<sup>9)</sup>에서는 조세의 경감에 대해 조세의 환불 또는 할인을 포함하며 경감 또는 환급은 수입과징금의 완전 또는 부분적인 면제 또는

---

7)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협정부속서 1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주 58  
 8) 부속서 1.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부속서 2. 생산과정에서의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지침 부속서 3. 수출 보조금으로서의 대체 환급제도 판정지침  
 9) 부속서 1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주 58에서는 이 협정의 목적상 각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참조)  
 - 직접세는 임금, 이윤, 이자, 지대, 사용료 및 다른 모든 형태의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동산 소유에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함  
 - 수입과징금은 관세, 조세 및 다른 재정적 과징금으로서 수입에 부과되나 이 주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함  
 - 간접세는 판매, 소비, 매상, 부가가치, 면허, 인지, 이전, 재고 및 설비에 대한 조세, 국경세 및 직접세 및 수입과징금 이외의 모든 조세를 의미함  
 - 전단계 간접세는 상품생산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된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된 조세를 의미함  
 - 누적 간접세는 어떤 생산단계에서 과세된 상품 및 서비스가 다음 생산단계에서 사용되는 경우, 기 과세분에 대한 공제제도가 없는 다단계 조세를 의미함  
 - 조세의 경감은 조세의 환불 또는 할인을 포함함  
 - 경감 또는 환급은 수입과징금의 완전 또는 부분적인 면제 또는 유예를 포함함

유예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내용은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되는 수출품에 대한 관세 또는 세금 환급제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음
  
- 보조금으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성을 가져야 하며 특정성에 대한 기준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sup>10)</sup>
  - 공여당국 또는 공여당국의 법률이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특정 기업으로 명백하게 한정하는 경우 이러한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다고 봄
  - 공여당국 또는 공여당국의 법률이 보조금의 수혜요건 및 금액을 규율하는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을 설정하고, 수혜요건이 자동적이며 이러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 특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이라 함은 종업원 수 또는 기업의 규모와 같이 중립적이고, 특정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보다 특혜를 주지 않으며, 성격상 경제적이며 적용 시 수평적인 기준 또는 조건을 의미함
  - 이러한 기준 및 조건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법률, 규정 또는 그 밖의 공식문서에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함
  
- 상위의 규정에서 정한 원칙의 적용 결과, 외견상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음<sup>11)</sup>
  - 이러한 요소는 제한된 수의 특정 기업에 의한 보조금 사용, 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인 사용,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 및 보조금 지급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 등임
  - 해당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조금계획이 집행되는 기간뿐 아니라 공여기관의 관할하에 있는 경제활동의 다양화의 정도를 고려함

10)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제2.1조

11)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제2.1조 주 2

- 다른 요소들을 특정적이라고 고려할 경우 특히 보조금 신청이 거부 또는 승인된 빈도에 대한 정보와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를 고려함
  
- 공여기관의 관할지역 중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하는 특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은 특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sup>12)</sup>
  - 그러나 이 협정의 목적상 권한이 있는 각급 정부(지방정부)에 의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의 설정 또는 변경은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특정성에 대한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명백히 입증되어야 함<sup>13)</sup>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부 금지보조금 제3조 금지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경우 모두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제1조의 의미 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에 해당됨<sup>14)</sup>
  - 부속서 1에 예시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 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사용할 수 없음
    - 부속서 1에서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된 조치는 이 규정 및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음
    - 보조금 지급이 법률적으로는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실제 또는 예상되는 수출이나 수출수입과 결부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함
    - 수출하는 기업에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보조금이 이 규정의 의미 내의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음
    - 그러나 수출 기업에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보조금이 본 규정에서 의미하는 수출보조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12)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제2.2조

13)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제2.4조

14)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제3.1조

-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 중의 하나로서,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수입대체 보조금)은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부속서 1 수출보조금 예시목록에서는 산업적 또는 상업적 기업이 지불한 또는 지불해야 할 직접세 또는 사회보장 부과금을 수출과 관련하여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 경감 또는 유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부속서 1에 예시된 보조금의 유형은 직접 수출보조금, 외화보유제도, 운송보조금,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의 특혜, 수출 관련 세금 감면, 부가가치세 또는 누적간접세 등 간접세의 과다환급, 수입과징금의 과다환급, 과도한 수출신용 보증 및 보험, 과도한 수출신용, 기타 공공계정의 부담 등이 있음
  - 직접세는 임금, 이윤, 이자, 지대 사용료 및 다른 모든 형태의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동산 소유에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함
  - 회원국은 보조금의 유예가 적절한 이자가 징수될 경우에는 수출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음
- WTO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수출과 관련한 직접세 유예와 수출상품 지원자금의 일부를 폐지하였음<sup>15)</sup>
  - 수출손실준비금제도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제도 등 수출과 관련하여 직접세를 유예하던 제도를 금지보조금 규정에 따라 1998년 4월에 폐지하였음
  - 수출상품 생산을 위해 지원되던 중소기업기반 조성자금 중 설비투자자금을 1996년에 폐지하였음

## 2)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 GATT 체제하에서는 수출원재료에 대한 범위를 물리적으로 통합된 것(Physically incorporated)으로 규정하여 매우 제한적인 범위로 해석하였음<sup>16)</sup>

15) 정재호·안덕근, 『WTO 보조금협정에 적합한 조세재정지원정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2., p. 46.

16) 김동엽·정현주·최영준·황윤섭, 『WTO 규범 하에서 관세 환급 및 보세공장제도의 적정운영 방안』, 경희대학교, 2003. 12. 10., p. 32.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자.17)에서는 수출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참작하여) 수입 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입과징금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경감 또는 환급을 금지하고 있음<sup>18)</sup>
  - 특수한 경우 기업은 수입 투입요소 대신에 그와 동질, 동일한 성격의 국내시장 투입요소를 대체품으로 일정량 사용하는 경우 수입과 그에 상응하는 수출이 2년을 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 해당 항목은 부속서 2에 포함된 생산과정에서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지침 및 부속서 3에 포함된 대체 환급제의 수출보조금의 결정 지침에 따라 해석된다고 규정하고 있음<sup>19)</sup>
  
- 부속서 2 생산과정에서의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지침의 서문에서는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요소로 촉매제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여 GATT에서 규정하는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sup>20)</sup>
  -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물리적으로 포함된 투입요소, 에너지, 연료와 기름 그리고 수출품을 얻기 위해 이들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소비된 촉매제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함
  
- 또한 폐기물도 수출품 생산에 소비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부속서 2 생산과정에서의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지침 2의 4에서는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특정 투입요소의 양을 결정할 때에는 폐기물의 정상적인 참작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같은 폐기물도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7)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을 근거로 표기하였음  
 18)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부속서1.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자.  
 19)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부속서1.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자.  
 20)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부속서 2 생산과정에서의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지침. 주 61

- 폐기물이란 용어는 생산과정에서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주어진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되지 않으며(비효율성 등의 이유로), 동일한 제조자에 의해 회수, 사용 또는 매각되지 아니하는 투입요소의 일부라고 정의하고 있음
- 부속서 2 생산과정에서의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지침 2의 5에서는 주장된 폐기물에 대한 참작이 정상적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당국은 생산과정, 수출국산업의 평균적 경험 그리고 다른 기술적 요소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함
- 조사당국은 폐기물의 양이 조세 또는 관세할인 또는 경감에 포함되는 용도의 것일 때 수출회원국의 동 폐기물의 양을 합리적으로 계산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함

## 나. 개정교토협약

### 1) 개정교토협약의 내용

- 국제적인 차원에서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세관절차와 관행의 정립을 위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WCO) 등 국제기구의 노력으로 세관절차의 단순화와 조화를 통한 무역확대를 추구하는 교토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이하 교토협약)이 채택되었음
- 1973년 교토에서 개최되었던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이하 CCC)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3년 10월에 해당 협약에 가입하였음
- 그러나 1973년에 교토협약은 가입국이 자유롭게 해당 조항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제공하였음
- 따라서 대부분의 체약국에서 협약의 목적인 무역 원활화를 유도하는 데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여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음

- 또한 급속적으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세관절차에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음
  
- WCO는 21세기의 세관절차의 단순화 및 조화를 통한 무역 확대를 위해 1994년부터 교토협약의 전면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1999년 6월 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을 채택하였음
  
- 개정교토협약은 협약 내용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기존 협약가입국 중 40개국 가입 후 3개월 경과 후 발효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 2006년 2월에 발효됨
  - 개정교토협약의 경우 일반부속서에 대해서는 유보가 불가능하나 특별부속서는 유보가 가능함
  -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이행 완료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이행의 강제성을 완화하도록 하였음
  - 다만, 개정교토협약 체결국은 3년마다 유보조항을 검토하여 해당 결과를 CCC 사무국에 통지해야 함
  
- 개정교토협약은 개정의정서, 협약본문, 일반부속서 10가지, 특별부속서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개정의정서에는 개정취지, 의정서 수락 및 발효조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협약본문은 의무적 수락사항으로 협약의 가입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일반부속서는 모든 가입국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일반원칙, 정의, 통관 및 기타 세관절차, 관세 및 제세금, 담보, 세관통제, 정보 기술의 이용, 제3자와의 관계, 세관이 제공하는 정보, 처분 및 재결, 이의신청 등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별부속서는 특별한 세관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며, 10개의 특별부속서는 다시 1~5개씩 장으로 구성되며 총 25개의 장(chapter)으로 장별로 수락이 가능함
- 특별부속서의 모든 조문은 표준과 권고관행으로 구성되며 권고관행은 채택을 유보할 수 있음
  - 특별부속서는 관세영역 도착(도착절차, 물품장치), 수입(내수용, 재수입, 면세), 수출(완전수출), 보세창고 및 자유지역, 운송(보세운송, 환적, 연안운송), 가공(국내/국외 가공, 환적), 일시수입, 범칙행위(관세사범), 특별절차(여행자, 우편물, 상업용 운송 수단, 선박용품, 구호물품), 원산지(원산지규정, 증명, 서류의 통제)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행지침의 경우 해설 지침으로 협약의 구성 부분이지만 구속력은 없음
  - 다만 협약 이행의 통일성과 해석이 유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WCO는 향후 협약개정 대신 이행지침을 개정하여 협약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표 II-1〉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체계

부속서(Annex)		장별 내용(Chapter)
A	물품 관세영역 도착	1. 물품신고서 제출 전 절차
		2. 일시장치
B	수입	1. 내수용 통관
		2. 동일한 상태 재수입
		3. 관세 및 제세금 면제
C	수출	1. 완전 수출
D	보세창고, 자유지역	1. 보세창고
		2. 자유지역
E	운송	1. 보세운송
		2. 환적
		3. 물품 연안운송
F	가공	1. 국내가공
		2. 국외가공
		3. 환급
		4. 내수용 물품 가공

〈표 II-1〉의 계속

부속서(Annex)		장별 내용(Chapter)
G	일시수입	1. 일시수입
H	관세범	1. 관세범
J	특별절차	1. 여행자
		2. 우편거래
		3. 상업용 운송수단
		4. 선박용품
		5. 구호용 탁송품
K	원산지	1. 원산지 규정
		2. 원산지 증명서류
		3. 원산지 증명서류 통제

자료: WCO, [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aspx](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aspx) 검색일자: 2022. 1. 10.

- 우리나라는 10개 부속서 25개 장 중 8개 부속서 14개 장을 채택하였으며 11개 장에 대해서는 수락하지 않고 있음<sup>21)</sup>
  - 동일 상태 재수입, 보세운송, 물품의 연안운송, 국내가공, 국외가공, 내수용 물품의 가공, 관세범, 여행자, 원산지 규정, 원산지 증명서류, 원산지 증명서류 통제에 대해 수락하지 않고 있음
- 특별부속서 F에서 가공 이행지침에서 보세가공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세창고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 그 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sup>22)</sup>
  - 특별부속서 F는 총 4개의 장(Chapter)으로 국내 가공, 국외가공, 관세환급, 내수용 물품의 가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내수용 가공은 수입 물품이 가정용 통관 전에 세관 통제하에 제조, 가공 또는 작업될 수 있는 세관절차를 의미하며 내수용을 위한 통관 전 통제하에 수입된 물품에 적용되는 수입 관세 및 제세금이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 적용됨

21) 정재호·마정화·정경화,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8., p. 18.

22) WCO, [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spanf.aspx](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spanf.aspx) 검색일자: 2021. 12. 15.

- 내수용 가공절차는 내수용 가공으로 만들어진 물품이 수입 물품을 가공하여 만들어졌음을 세관이 인정할 수 있거나, 제품의 제조, 가공 또는 작업 후에 경제적 제품의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시 승인 가능함
-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원재료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폭넓게 해석이 가능한 측면이 있음

## 2) 특별부속서 F와 우리나라 관세법 비교

- 보세가공제도에 대한 특별부속서 F 중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관세법」과 비교하여 부합 및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음
- 다만, 특별부속서 F에 해당하는 규정은 권장사항일 뿐이며 한국은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를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보세공장제도의 규정이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
- 특별부속서 F에서는 국내 가공에 대해 특정 상품이 제조, 가공 또는 수리 및 후속수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근거로 수입관세 및 세금 납부가 조건부로 면제되는 관세영역으로 반입될 수 있는 세관절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sup>23)</sup>
  - 내부처리를 위해 승인된 물품은 수입관세 및 세금으로부터 완전한 조건부 면제 혜택을 제공함
- 특별부속서 F의 규범 2에서는 국내 가공에 대해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관세 및 제세금에 대해서 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수입관세 및 제세금은 내부 처리가 허용된 상품의 가공 또는 제조에서 파생되는 폐기물 등 부산물로 수출되거나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는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는 모든 제품에 대해 징수될 수 있다고 규정함<sup>24)</sup>

23) WCO, [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spanf.aspx](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spanf.aspx) 검색일자: 2022. 1. 10.

24) WCO, [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spanf.aspx](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spanf.aspx) 검색일자: 2022. 1. 10.

- 교토협약상에서 국내 가공은 보세공장만 포함하는 것이 아닌 자유무역지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sup>25)</sup>
- 우리나라의 경우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부산물에 대해서 2020년 7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세관장은 폐기 후 잔존물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sup>26)</sup>
  - 기존에는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부산물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세관장의 판정에 따른다고 하여 혜택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측면이 있었음
- 특별부속서 F의 규범 3에서는 내부 가공은 해외에서 직접 수입된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다른 세관절차를 거치는 상품에 대해서도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sup>27)</sup>
  -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어 세관절차가 진행 중인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원재료로 확인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 다만, 「관세법」 제185조의 5에서 세관장은 수입통관이 이루어진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 특별부속서 F의 규범 5에서는 국내 가공을 위한 수입물품의 가공권은 수입된 물품의 소유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음<sup>28)</sup>
  - 우리나라의 경우 운영인이 물품에 대해 신고를 하면 세관의 허가에 따라 가공하여 수출이 가능하므로 소유권이 소유자에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규정에 부합하고 있음

25) 김동엽 외, 『WTO 규범하에서 관세환급 및 보세공장제도의 적정운영 방안』, 경희대학교, 2003. 12. 10., p. 103.

26)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27) WCO, [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spanf.aspx](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spanf.aspx) 검색일자: 2021. 12. 15.

28) WCO, [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spanf.aspx](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spanf.aspx) 검색일자: 2021. 12. 15.

- 특별부속서 F의 규범 6에 따라 해외에 설립된 자와 체결한 국내 가공계약을 이용할 시 사용할 물품을 계약자가 제공하는 경우, 물품의 설명, 품질 및 기술적 특성이 동일한 물품을 입수할 수 있다는 사유에 따라 국내 가공을 거부할 수 없음<sup>29)</sup>
- 이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국내 가공절차를 적용하여 국내에서 특정한 물품을 입수한다는 이유로 특정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음
  - 가장 최근 개정된 교토협약에서는 기존 교토협약보다 국내 가공 절차를 수입 물품에 대해 상당히 넓은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2000년에 개정된 교토협약상에서는 교토협약보다 제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품의 생산과정에서 실제 수출품은 아니지만 소비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및 제세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sup>30)</sup>
    - 또한 대응 제품 생산에 소모되는 촉매제, 촉진제, 지연제에 대해서 대응 제품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응 제품의 수출을 조건으로 관세 및 제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유행유와 같이 단순히 제조를 돕는 물품 및 대응 제품 생산에 소모되는 전력, 기구, 기계 또한 관세 및 제세금 면제에서 제외됨
    - 2000년 개정교토협약에서 또한 국내 가공이 물품의 가치 상승과 같은 주요 변화 뿐 아니라 소포장이나 포장, 재포장과 같은 경미한 가공 작업을 포함한다고 하여 국내 가공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sup>31)</sup>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201조(외국물품의 반입제한)에서 관세청장은 국내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법」 제185조 제5항에 따른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외국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9) WCO, [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spanf.aspx](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spanf.aspx) 검색일자: 2021. 12. 15.

30) WCO, "Kyoto Convention Guidelines To Specific Annex F Chapter 1 Inward processing", 2000. 7., P. 11.

31) WCO, "Kyoto Convention Guidelines To Specific Annex F Chapter 1 Inward processing", 2000. 7., P. 3.

- 「관세법」 제185조 제5항에서는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부속서 F의 규범 6과 일부 상충되는 것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제한 권한이 우리나라 정부임을 의미하여 보호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음
- 특별부속서 F의 규범 16에서는 관계자의 신청으로 세관이 타당성을 인정할 시 최초 결정된 국내가공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sup>32)</sup>
-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특별부속서 F의 규범 16과 합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관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는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제185조 제1항에 따른 작업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임
  - 「관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서는, 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보세공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별부속서 F의 규범 19에서는 대응 물품이 국내 가공을 위해 물품이 수입된 세관 이외의 세관을 통해 수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sup>33)</sup>

32) WCO, [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spanf.aspx](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spanf.aspx) 검색일자: 2021. 12. 15.

33) WCO, [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spanf.aspx](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spanf.aspx) 검색일자: 2021. 12. 15.

- 국내 가공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규정인 만큼 우리나라의 규정에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세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관세법」 제187조에서 보세구역 외 작업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제187조 제5항에서는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 외 작업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봄
  -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외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음

## 2. 우리나라의 보세공장제도

### 가. 개요

#### 1) 보세공장의 정의

- 우리나라의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함<sup>34)</sup>
  -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함<sup>35)</sup>
-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과세 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 활성화에 기여함<sup>36)</sup>

34) 「관세법」 제185조 제1항

35) 「관세법」 제1541조

36)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4&cntntsId=831>, 검색일자: 2022. 1. 7.

## 2) 보세공장의 종류

-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생산된 완제품이 반드시 수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바, 수출용 보세공장과 내수용 보세공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sup>37)</sup>
  - 수출용 보세공장은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들여와서 국내의 노동력·기술·자본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재수출하는 가공무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세환급 제도와 동일한 목적을 가짐<sup>38)</sup>
  - 내수용 보세공장은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관세가 이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보다 높은 경우에 이용되는 제도로 국내의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해당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낮은 관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생산활동을 하는 국내 산업이 발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sup>39)</sup>
  
- 보세공장의 관리방법을 기준으로는 단일보세공장, 자율관리 보세공장,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귀금속류 보세공장, 기내식 보세공장,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가) 단일보세공장<sup>40)</sup>

- 근접한 장소에 있는 2개 이상의 공장이 다음을 충족할 때에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세관업무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관계 세관과 협의하여 주공장 관할세관에서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음

37)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pp. 676~677.

38)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pp. 676~677.

39)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pp. 676~677.

40)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 각 공장이 동일 기업체에 속하며 각 공장 간 물품관리체계의 통합관리로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제조·가공의 공정상 일괄작업에 각 공장이 필요한 경우
- 또한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 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으로서는 해당 보세공장에 원재료 및 제품 등의 추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다음을 충족할 때에는 동일 세관 관할구역에 보관창고를 증설하게 할 수 있음
- 보관창고는 해당 보세공장의 원재료 및 생산제품을 보관하는 전용 창고일 것
  - 물품관리는 보세공장과 보관창고 물품의 통합관리로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나) 자율관리 보세공장<sup>41)</sup>

-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에 따라 다음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공장을 말함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5조에서 정한 A등급 이상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인 자
  - 「관세법」 제16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보세공장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보세사를 채용한 자
  - 전년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출입신고금액 중 수출신고금액 비중이 50%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수출신고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자(보세공장에서 사용신고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동일 법인인 다른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되어 추가 공정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실적에 포함한다)
    - 다만, 신규 보세공장은 기존 자율관리 보세공장에서 증설된 경우로서 제조·가공 공정이 동일한 경우 기존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수출입실적을 적용할 수 있음

41)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내지 제37조

○ 반출입, 제조·가공, 재고관리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인·점검할 수 있는 기업 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에 세관 전용화면을 제공하거나 해당 시스템의 열람 권한을 제공한 자

□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자율관리 보세공장의 특례)에 따른 화물의 반출입 및 관리 등의 일부 절차를 생략, 보세운송절차 생략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다)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sup>42)</sup>

□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세관의 관리부담을 덜고 쉽고 편리하게 보세가공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 완화 및 세관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2020년 신설됨

□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전년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자가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공장을 말함

□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운영인은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특례 등에 대해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특례적용 대상으로 지정받은 작업, 품목, 장소 등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라) 귀금속류 보세공장<sup>43)</sup>

□ 귀금속류 보세공장은 귀금속 및 보석류를 제조·가공하는 공장으로 특허 및 운영에 대해 다음 규정을 따름

42)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의3

43)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4조

- 설치·운영특허의 경우 물품검사를 위한 필요한 측정용 기기와 이에 부수하는 장비 비치, 원재료와 제품을 구분하여 안전하게 장치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금고를 구비하여야 함
- 물품의 장치 및 관리의 경우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창고 또는 금고에 세관 봉인을 할 수 있음
- 물품의 반출입검사의 경우 세관장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자체 검사대상 선별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장외작업 및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은 허용하지 않으며, 다만 성실업체로서 세관장이 판단하여 감시·단속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음
- 운영인은 원석 등의 절단 작업장과 일반작업장을 분리하여 작업하여야 함
- 세관장은 원재료·제품의 반출입 및 관리방법, 보세작업신고, 보세작업완료보고 등 귀금속류 보세공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규를 정하여 관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음
- 귀금속류 보세공장의 소요량 관리는 보세작업기간 총소요량으로 하며 정해진 요건을 따름

마) 기내식 보세공장<sup>44)</sup>

- 기내식 보세공장은 항공기에 탑승 또는 탑승대기하는 승무원 및 승객에게 제공할 기내식을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보세공장으로 특허 및 운영에 대해 다음의 규정을 따름
  - 물품의 장치 및 관리의 경우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세관 봉인과 물품 반출입 시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음
  - 장외작업 및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은 허용하지 않음
  - 세관장은 기내식 보세공장 특성을 감안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는 자체내규를 정하여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운영할 수 있음

44)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

바) FTA형 특별보세공장<sup>45)</sup>

- FTA형 특별보세공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때에는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음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자
  - 해당 업체 연간 수출실적의 3분의 1 이상을 FTA협정 체결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 예정인 자
  
-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설요건의 확인이나 일부 서류의 제출 생략 등의 운영 및 물품의 반출입 절차상의 특례가 적용됨
  - FTA형 특별보세공장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의 장치공간 협소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를 허용할 수 있음
  - FTA형 특별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하여 입항전 사용신고 또는 사용신고 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음
  - 세관장은 FTA형 특별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을 신청하는 경우 내국작업에 따른 유희시설 등이 아니더라도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음

3) 보세공장제도의 변화

- 우리나라의 보세공장제도는 가공무역의 진흥을 위해 「관세법」이 제정될 때부터 마련된 제도이며, 1970년대에 경제정책 방향이 수출지원에 치중되었으므로 보세공장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sup>46)</sup>
  
- 보세공장제도는 임가공 등을 통한 수출 증대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제도로 운영되었으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보세공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음<sup>47)</sup>

45)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의2

46) 김영춘·최해범(2011), pp. 25~52.

- 보세공장제도는 도입 초기에 활성화되었다가 관세환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세공장 특허대상을 제한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세공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
- 2020년에는 보세공장 보세작업 범위 확대, 보세공장 반입대상 범위 확대,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물품 대상 범위 확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 등이 신설된 바 있음
  -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자재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공정 등도 보세작업의 한 종류로 인정하여 보세공장 내에서 원재료의 성능검사 및 선별작업 허용<sup>48)</sup>
  -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범위에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물품의 마무리 작업, 유지보수, 수리 등을 위해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이 필요한 물품 및 수리를 위해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선박·항공기 내에 적재된 유류를 규정<sup>49)</sup>
  -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 대상 범위에 사용 신고하거나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규정<sup>50)</sup>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5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요건 간소화 및 특례 신설<sup>51)</sup>

〈표 II-2〉 우리나라의 보세공장제도 변화

연도	주요 내용
1960년대	- 피복류, 내의, 가발제조 등 수공업 중심 운영
1970년대	- 전자기기 제조·가공업 중심 활성화
1972. 12.	- 내수용 보세공장 허용 - 수출용/내수용 보세공장 엄격히 구분 운영
1975. 7.	- 관세환급제도 도입 - 보세공장은 관세환급제의 보완제도로 인식, 운영
1984	- 보세공장 소요량 증명제 도입(관세중앙분석소)
1985	- 단일 보세공장 특허제도 도입(주공장 관할세관 특허)
1987	- 운영인이 제출하는 실소요량 제도로 변경

47) 김영춘·최해범(2011), pp. 25~52.

48)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49)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50)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

51)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의3

〈표 II-2〉의 계속

연도	주요 내용
1997	- 수입통관 후 사용하는 시설재까지 반입 허용
2001. 8.	- 수출용/내수용/수출내수 겸용 보세공장 용도구분 폐지
2004. 3.	- 연구·시험용 제품의 제조·가공 원재료 반입 허용
2006. 6.	- 세관 관할구역 내 보세공장 보관창고 증설 허용
2007. 12.	- 중소기업 수출지원 FTA형 특별보세공장 제도 도입
2009. 8.	- 수리, 조립, 포장 등 보세공장 특허대상 작업 범위 확대
2010. 12.	-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 도입
2020. 7.	- 바이오 신산업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보세작업 범위 확대 - 보세공장 반입대상 범위 확대 -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물품 대상 범위 확대 -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 신설

자료: 김영춘·최해범, 「보세공장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제12권 제3호, 2011. 8, pp. 25~5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4) 보세공장제도의 현황

- 보세공장 업체 수는 1988년에 293개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에는 162개로 감소함
- 보세공장 특허대상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세공장 이용업체 수는 하향 추세에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FTA 체결 확대 등 관세율 인하로 보세공장 특혜요소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됨<sup>52)</sup>

〈표 II-3〉 보세공장 업체 수

(단위: 개)

연도	1970	1988	2000	201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업체 수	145	293	159	194	173	168	171	170	163	162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52) 이명구, 「보세공장 운영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장외작업장을 중심으로」, 『한국관세학회지』, 제19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8. 12., p. 131.

- 2021년 기준 업종별 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 57개, 기계 30개, 전자 22개, LCD 18개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주력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4〉 보세공장 업종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반도체	기계	전자	LCD	조선	화학	금속	기내식	바이오	계
개수	57	30	22	18	13	8	8	4	2	162
비중	35.2	18.5	13.6	11.1	8.0	4.9	4.9	2.5	1.2	100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 2021년 기준 보세공장 수출액은 약 1,654억달러로 전년 대비 20.8% 증가하였으며, 총수출액의 25.7%를 차지함

〈표 II-5〉 보세공장 수출 현황

(단위: 개, 백만달러, %)

구분	업체 수	수출액	수출 비중	총수출액
2020년	163	136,847	26.7	512,498
2021년	162	165,374	25.7	644,439
증감	-	20.8	-	25.7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 나. 관련 규정

- 보세구역은 보세제도 중 하나로,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보세 상태에서 장치·검사·제조·가공·전시·건설·판매·운송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함<sup>53)</sup>
-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 상태에서 장치·검사·전시·판매하거나 제조·가공하거나 산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장소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정한 장소를 말함<sup>54)</sup>

53)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p. 649.

54)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p. 650.

- 보세구역 가운데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함
  
- 우리나라의 보세공장제도는 「관세법」 제185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에서 제207조까지,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 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외국물품의 반입제한, 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보세공장의 작업허가 신청,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 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보세공장 운영인의 기장의무, 재고조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특허수수료, 항외하역수수료, 보세공장의 업종제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보세공장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실무적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인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다. 보세공장제도

### 1) 허가요건 및 허용업종

#### 가) 허가요건

- 보세공장은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공장의 규모와 입지적 조건, 그 밖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보세공장관리 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함<sup>55)</sup>
  - 제조·가공 그 밖의 보세작업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의 비치
  - 물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용 기기와 이에 부수하는 장비의 비치

55)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 원재료, 제품, 잉여물품,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하는 물품 및 기타 반입물품을 구분하여 안전하게 장치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야적장과 필요한 작업장의 확보
  - 소방법령 및 소방관서가 지정하는 방화 및 소방시설의 구비
  - 전기사업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시설의 구비
  -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완비하거나 보안전문업체와 경비위탁계약서를 구비
  -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보세공장의 경우는 위험물취급요령 및 그 밖의 법령(「유해화학물질관리법」, 소방관련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기타)에서 정한 시설의 완비 및 취급자격자의 상근과 위험물품 보세공장 특허지역으로서의 적합한 지역
- 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장을 받아야 함<sup>56)</sup>
-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사본
    -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신설공장으로 한정한다)
    -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따른 검사확인증
    -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의 인적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운영인·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로 한정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56)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 국세납세증명
- 법인등기부 등본

- 세관장은 상기 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보세공장으로 특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할 수 있음<sup>57)</sup>
- 세관장은 특허대상, 특허요건(시설요건, 관리요건) 및 특허제한 사유 등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sup>58)</sup>
  
- 한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제한할 수 있음
- 보세공장의 설치·운영 특허를 할 수 없는 경우<sup>59)</sup>
  -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보세작업의 종류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치·운영 특허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sup>60)</sup>
  - 보수작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폐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손모음이 불안정한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보세작업의 전부를 장외작업에 의존할 경우

#### 나) 허용업종

- 우리나라는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sup>61)</sup>

57)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3항

58)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

59)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60)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항

61) 「관세법」 제185조 제5항

- 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제외한 업종으로 함<sup>62)</sup>
  -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종
- 또한 관세청장은 국내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음<sup>63)</sup>

## 2) 원재료 및 작업의 범위

### 가) 원재료

-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 상태로 보세가공을 할 수 있는 물품을 보세공장 원재료라고 하며,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sup>64)</sup>
  -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
-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하고 있음<sup>65)</sup>

62)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

63) 「관세법 시행령」 제201조

64)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

65)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

- 보세공장 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일 것을 보세공장 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sup>66)</sup>
  - 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sup>67)</sup>
  
-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구체화하여 보세공장에서 보세가공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유형을 ① 보세공장 원재료와 ②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등 시설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① 보세공장 원재료는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에게 설치·운영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한정함<sup>68)</sup>
  - ② 수입통관 후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기구, 부분품, 소모품, 견품, 내국작업 원재료 및 해당 보세공장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될 시설기자재·원재료 등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함<sup>69)</sup>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제1항 제22호에 의해 「관세법」에 따라 보세공장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의 보세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와 같은 시설재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입대상 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공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음<sup>70)</sup>
    -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제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반출한 후 하자발생, 불량, 구매자의 인수거절 등으로 인하여 반송된 물품

66)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제2항

67)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제3항

68)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69)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2항

70)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3항

- 해당 보세공장의 생산품목과 동일품목을 보세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거쳐 재수출하거나 다른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공급할 물품
- 해당 보세공장에서 건조·수리되는 선박(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선(기)용품 (환급대상물품은 제외)
- 해당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국내 보세공장에서 마무리작업, 성능검사, 조립, 재포장, 상표(LABEL) 부착의 작업을 하거나 해당 보세공장에 반입 후 양수도 또는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완성품
-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해당 보세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구·시험용 제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
- 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과 세트를 구성하거나 함께 거래되는 물품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운반용품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받은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 되는 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위탁가공계약에 의해 보세작업을 위하여 반입되는 타인 소유 물품
-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물품의 마무리 작업, 유지보수 또는 수리 등을 위해 추가로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이 필요한 물품
- 수리를 위해 반입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연료

#### 나) 작업의 범위

-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리·조립·분해·검사(원재료 품질검사 등을 포함한다)·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수 있음<sup>71)</sup>
  - 2020년 고시 개정을 통해 바이오 신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보세작업의 범위에 원재료의 품질검사 공정을 포함함
- 또한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음<sup>72)</sup>

71)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 상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당해 작업은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작업과 구별하여 실시하여야 함<sup>73)</sup>
  - 작업의 종류
  - 원재료의 품명 및 수량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 작업기간

### 3) 화물관리 및 장치기간

#### 가) 화물관리

- 보세공장은 관세가 유보된 외국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되고 제조·가공에 따라 생산된 완제품 등이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보세공장의 관리요건으로서 보세화물 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sup>74)</sup>
  - 보세화물 관리를 위하여 1명 이상의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함
  - 원자재의 반출입, 제품 제조·가공, 제품 반출 및 잉여물품의 처리 등과 관련한 물품관리체계<sup>75)</sup>가 확립되어 있고, 물품관리를 위한 시스템(기업자원관리(ERP) 시스템 등)을 구비하여야 함
  - 원자재 등의 부정유출 우려가 없으며, 보세작업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어야 함
  -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신청 전의 특허기간 동안 해당 보세공장의 법규 수행능력평가 평균등급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함

72) 「관세법」 제185조 제2항

73) 「관세법 시행령」 제200조

74)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2항

75)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보세공장(장외작업 포함)에서 원재료, 잉여물품 및 제품에 대한 반출입사항(예: 기초재고, 반입, 반출, 기말재고)과 생산공정에서의 원재료, 잉여물품 및 제품의 수불사항(예: 기초재고, 투입, 생산, 재공품, 기말재고)이 장부 또는 자료전달 및 보존매체(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산매체)에 따라 기록하고 동 기록을 유지해서, 최종적으로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및 관련 부속서류와 연계되어 보세화물의 재고 등을 파악 관리하는 일련의 체제를 말함

- 이에 따른 물품관리를 위하여 운영인은 보세작업의 종류 및 특수성에 따라 장부 또는 자료전달 및 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산매체)를 사용하여 물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자료전달 및 보존매체에 따라 보관·관리하려는 운영인은 자료보존매체를 확인, 조회할 수 있는 장치를 같이 보관·관리하여야 함<sup>76)</sup>
- 보세공장의 운영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각각 구분하여 장치하여야 하며, 물품을 전산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자동화 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함<sup>77)</sup>
  - 보세가공용 원재료 등(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물품 포함)
  -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하는 외국물품
  -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 수리된 물품
  - 보세작업 결과 발생한 잉여물품
  - 내국작업 물품
-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한 경우 주공장 관할지 세관(특허세관)장은 공장 및 공정별로 구분하여 보세공장을 관리함<sup>78)</sup>
  - 다만, 보세공장의 감시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운영실태 등의 업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보세공장 운영인은 물품의 반출입사항, 잉여물품의 처리사항 등 보세공장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산매체)를 업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sup>79)</sup>
- 이에 따라 보세공장 운영인은 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및 보세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음<sup>80)</sup>

76)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3항

77)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1항

78)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2항

79)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

- 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반입 또는 반출연월일과 신고번호
  - 작업에 사용한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분, 품명·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사용연월일
  -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검사연월일
  -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 승인연월일
    - 혼용한 물품 및 생산된 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내외국물품의 구별과 생산연월일
  -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세공장 바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 허가연월일 및 허가기간
    - 반출장소
    -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 또한 세관장은 원자재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의 적정 여부, 기장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sup>81)</sup>

#### 나) 장치기간

-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특허기간으로 함<sup>82)</sup>
  - 보세공장 설치·운영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보세공장의 설치·운영 특히 신청기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으며, 다만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치·운영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의 특허기간은 임차계약기간으로 함<sup>83)</sup>

80) 「관세법 시행령」 제206조

81) 「관세법 시행령」 제207조

82)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7항

83)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장치기간은 반입일부터 1년으로 하며, 물품의 관리는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름<sup>84)</sup>

#### 4) 관세담보 및 기타

-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부담 완화를 이유로 2010년부터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담보 제공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보세공장 외에서 가공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담보 제공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함<sup>85)</sup>
  -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상기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음
  
-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물품은 ‘잉여물품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고, 폐기 후 잔존물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함
  - 운영인은 잉여물품이 발생한 때에는 잉여물품관리대장에 잉여물품의 형태, 품명·규격, 수량 또는 중량 및 발생사유를 기록하여야 하며, 잉여물품을 다른 보세작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잉여물품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함<sup>86)</sup>
  - 잉여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세관장의 승인(별지 제16호서식)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84)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3항

85) 「관세법」 제189조

86)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음<sup>87)</sup>

-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보안상의 사유로 해당 보세공장의 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잉여물품의 원형을 변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기승인 절차 없이 잉여물품 등에 대한 원형 변형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인은 작업 내역을 자체적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함

○ 운영인이 승인받은 물품을 폐기할 경우에 세관공무원은 폐기물품의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이 현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를 완료한 운영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폐기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기완료보고(별지 제17호서식)를 하여야 함<sup>88)</sup>

- 이 경우 세관장은 폐기 후 잔존물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함

○ 운영인이 잉여물품을 수입신고전 반출신고,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사가 확인한 잉여물품확인서(별지 제1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sup>89)</sup>

- 다만, 일시적으로 보세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운영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잉여물품확인서를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세관장은 운영인이 잉여물품을 폐기하는 때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법규 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등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중 멸각 후의 잔존물이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사전에 자체폐기 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음<sup>90)</sup>

- 이 경우 폐기수량 확인 및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정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완료증명서를 제출받아 보세공장 운영인이 자체적으로 대장관리 하도록 하며, 세관장은 재고조사 시에 이를 일괄하여 확인함으로써 폐기신청, 폐기 시 입회확인 및 폐기완료보고 등을 생략하게 할 수 있음

87)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2항

88)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

89)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4항

90)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5항

### Ⅲ. 주요국의 보세공장제도

#### 1. 미국의 보세공장제도

##### 가. 관련 규정

- 미국의 보세공장은 수입된 원자재 또는 내국세 과세대상 원자재를 사용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된 모든 물품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출용 생산이 가능한 보세창고(보세공장)에서 만들거나 생산하는 곳을 말함<sup>91)</sup>
  
- 미국의 보세공장제도는 미국 연방법전(19 U.S.C. §1311) 및 미국 연방 관세규정(CFR Title 19, chapter 1, Part19)에서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연방 관세규정은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령」과 유사한 성격으로 관세와 통관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sup>92)</sup>
  
- 연방 관세규정(CFR Title 19, chapter 1, Part19 §19.13 - 19.16)에서는 보세공장의 설립요건, 기록보관요건, 원재료, 반출 등의 보세공장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91) 김영춘·최해범, 「보세공장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제12권 제3호, 2011. 8., pp. 25~52.

92) 정재호·정재완, 『관세법 체계의 국제비교 연구-조세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1., p. 20.

〈표 III-1〉 보세제도 관련 미국 연방 관세규정(19 CFR Part 19)의 구성

구분	내용	
§19.1	Classes of customs warehouses	
General Provisions	§19.2	Applications to bond
	§19.3	Bonded warehouses; alterations; relocation; suspensions; discontinuance
	§19.4	CBP and proprietor responsibility and supervision over warehouses
	§19.5	[Reserved]
	§19.6	Deposits, withdrawals, blanket permits to withdraw and sealing requirements
	§19.7	Expenses of labor and storage
	§19.8	Examination of goods by importer; sampling; repacking; examination of merchandise by prospective purchasers
	§19.9	General order, abandoned, and seized merchandise
	§19.10	Examination packages
Manipulation in Bonded Warehouses and Elsewhere	§19.11	Manipulation in bonded warehouses and elsewhere
Accounts	§19.12	Inventory control and recordkeeping system.
Manufacturing Warehouses	§19.13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warehouse
	§19.13a	Recordkeeping requirements
	§19.14	Materials for use in manufacturing warehouse
	§19.15	Withdrawal for exportation of articles manufactured in bond; waste or byproducts for consumption
	§19.16	[Reserved]

〈표 Ⅲ-1〉의 계속

구분	내용	
Smelting and Refining Warehouses	§19.17	Application to establish warehouse; bond
	§19.18	Smelting and refining; allowance for wastage; withdrawal for consumption
	§19.19	Manufacturers' records; annual statement
	§19.20	Withdrawal of products from bonded smelting or refining warehouses
	§19.21	Smelting and refining in separate establishments
	§19.22	Withdrawal of metal refined in part from imported crude metal and in part from crude metal produced from imported materials
	§19.23	Withdrawal for exportation from one port to be credited on warehouse entry account at another port
	§19.24	Theoretical transfer without physical shipment of dutiable metal
	§19.25	Credit to be applied under various forms of withdrawals
Space Bonded for the Storage of Wheat	§19.29	Sealing of bins or other bonded space
	§19.30	Domestic wheat not to be allowed in bonded space
	§19.31	Bulk wheat of different classes and grades not to be commingled in storage
	§19.32	Wheat manipulation; reconditioning
	§19.33	General order; transportation in bond
	§19.34	Customs supervision
Duty-Free Stores	§19.35	Establishment of duty-free stores (Class 9 warehouses)
	§19.36	Requirements for duty-free store operations
	§19.37	Crib operations
	§19.38	Supervision of exportation
	§19.39	Delivery for exportation

〈표 III-1〉의 계속

구분		내용
Container Stations	§19.40	Establishment, relocation or alteration of container stations
	§19.41	Movement of containerized cargo to a container station
	§19.42	Application for transfer of merchandise
	§19.43	Filing of application
	§19.44	Carrier responsibility
	§19.45	Transfer of merchandise, approval and method
	§19.46	Employee lists
	§19.47	Security
	§19.48	Suspension or revocation of the privilege of operating a container station; hearings
	§19.49	Entry of containerized merchandise

자료: 19 CFR Part 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나. 보세공장제도

### 1) 허가요건 및 허용업종

#### 가) 허가요건

- 미국에서 보세가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무부 규정에 따라 유형 6로 구분되는 보세 공장으로 지정되어야 함<sup>93)</sup>

93) 19 CFR §19.1

- 유형 6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이란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보세상태로 제조하는 창고로서 세관이 지정한 창고와 1개 국가로부터 수입된 담배원료만을 전적으로 사용하여 시가(cigar)를 내수용 또는 수출용으로 보세상태로 제조하기 위한 창고를 말함
- 미국의 보세구역 유형은 크게 11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 중 유형 6이 일반적인 보세공장제도를, 유형 7은 철강가공 보세공장제도를 말함
  - 유형 1은 세관검사물품, 압류 및 유치 상품의 보관을 위해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지정보세장치장으로 규정됨
  - 유형 2는 소유자의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자가용 보세창고(Private Bonded Warehouse)로 규정됨
  - 유형 3은 일반인의 수입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영업용 보세창고(Public Bonded Warehouse)로 규정됨
  - 유형 4는 중량품과 벌크화물의 보관을 위한 보세 야적장으로 규정됨
  - 유형 5는 곡물 보관을 위한 보세저장소 또는 건물로 규정됨
  - 유형 6은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보세공장으로 규정됨
  - 유형 7은 수입 철강이 함유된 물질을 수출용 또는 내수용으로 용해하거나 정제하는 창고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특수한 유형의 보세공장으로 규정됨
  - 유형 8은 세관 감독하에 운영인의 비용으로 수입물품의 청소, 분류, 재포장 또는 상태변경 등 단순작업만을 할 수 있는 보세작업장으로 규정됨
  - 유형 9는 세관구역 외의 사용을 위해 공항 또는 수출을 위한 출국지점에서 면세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면세점(duty-free stores)으로 규정됨
  - 유형 10은 유보로 규정됨
  - 유형 11은 일반명령(General Order) 물품의 보관을 위한 보세창고로 규정됨<sup>94)</sup>

94) 일반명령물품은 미국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 또는 권리가 주장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함

〈표 III-2〉 미국 보세구역의 유형

구분	내용
유형 1	지정보세장치장
유형 2	자가용 보세창고(Private Bonded Warehouse)
유형 3	영업용 보세창고(Public Bonded Warehouse)
유형 4	보세 야적장
유형 5	보세저장소
유형 6	보세공장
유형 7	철강가공 보세공장
유형 8	보세작업장
유형 9	면세점(duty-free stores)
유형 10	(유보)
유형 11	일반명령(General Order)물품의 보세창고

자료: 19 CFR § 19.1

- 보세공장은 보세작업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 및 시설 요건을 충족하고 관세채권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경우 지정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관한 설립요건이 적용되고 있음<sup>95)</sup>
  - 수입물품 및 국내주류 등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와는 분리된 보안구역을 두어야 하며, 권한이 없는 사람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이 확보되어야 함<sup>96)</sup>
    - 시설의 일부가 비보세물품의 보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보세물품과 비보세물품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담장, 울타리 또는 페인트를 칠한 선으로 지정해야 하며, 모든 출입구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함<sup>97)</sup>
  - 보세공장 내의 물품은 세관 직원이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분석을 위한 샘플 수집이 용이하도록 정리되어야 함<sup>98)</sup>

95) 19 CFR §19.13(a)

96) 19 CFR §19.13(g)

97) 19 CFR §19.4(b)(6)

98) 19 CFR §19.13(g)

- 운영인은 제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각 포장에 정확한 물품신고(entry) 번호와 날짜를 표시해야 하며, 제조가 완료된 후에는 완제품의 각 포장에 물품신고 번호와 날짜를 표시해야 함<sup>99)</sup>
- 설립요건에 따라 공장의 규모, 구조, 위치, 제조, 보관 및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관할세관에 제출해야 함<sup>100)</sup>
- 건물을 담보로 한 신청과 담보의 집행은 담보규정(19 CFR §19.2)을 따라야 함<sup>101)</sup>
- 보세공장에서 제조되는 모든 물품의 목록은 관할세관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목록은 수출될 물품의 구체적인 명칭과 그러한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의 명칭과 소요량이 표시되어야 함<sup>102)</sup>

#### 나) 허용업종

- 미국은 보세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수출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국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보세상태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재무부장관이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sup>103)</sup>
- 다만, 곡물로부터 증류된 원액(주정), 전분, 당밀, 설탕과 이들의 혼합물 또는 희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밀을 밀가루로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세가공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sup>104)</sup>

---

99) 19 CFR §19.13(g)

100) 19 CFR §19.13(b)

101) 19 CFR §19.13(c)

102) 19 CFR §19.13(d)

103) 19 U.S.C. §1311

104) 19 U.S.C. §1311

## 2) 원재료 및 작업의 범위

### 가) 원재료

- 보세공장에 반입이 허용되는 과세보류 물품은 수입 원재료뿐만 아니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된 모든 포장, 커버, 용기, 라벨 등임<sup>105)</sup>
  - 다만, 보세공장의 건설 또는 수리에 사용되거나 그 안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 기계,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지속적으로 세관에 보고되어야 하며, 보세공장 운영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생산물품 목록, 생산방식, 사용될 원재료의 명칭과 수량을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sup>106)</sup>
  - 보세공장에서 사용되는 수입물품은 납세신고서(Customs Form 750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 양식을 통해 사전에 관할세관으로 사용신고를 하여야 함<sup>107)</sup>
    - 해당 양식에는 통계정보규정(19 CFR §141.61(e))에 따른 모든 통계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사본 5부가 제출되어야 함
  - 원재료가 수입되거나 다른 항구에 있는 창고로 반입된 경우에는 검사 및 보세창고 인출<sup>108)</sup>을 적용받지 않고 보세공장으로 즉시 운송될 수 있음<sup>109)</sup>
  
-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내국물품(포장, 커버, 용기, 라벨 등)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운영인은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관할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에는 이를 보관해야 함<sup>110)</sup>

105) 19 U.S.C. §1311

106) 19 U.S.C. §1311

107) 19 CFR §19.14(a)

108) 보세창고 인출(Warehouse Withdrawal)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의 경우 해당 관세를 납부하고 쿼터적용 품목인 경우는 해당 물량에 대한 비자를 받아야 하며, 수입자가 통관 서류를 제출한 후 제품을 찾을 수 있음

109) 19 CFR §19.14(a)

110) 19 CFR §19.14(c)

[그림 Ⅲ-1] 내국물품 반입 신청서

**APPLICATION TO RECEIVE FREE MATERIALS**  
 Port of \_\_\_\_\_, 19\_\_.

To the Port Director:

Application is hereby made to receive into the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known as \_\_\_\_\_, situated at \_\_\_\_\_ the following described articles and materials:

Marks	Nos.	Description	Quantity	Value

(Signature)  
 Port \_\_\_\_\_, 19\_\_.

To the warehouse proprietor in charge of the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specified above:  
 The above described articles and materials are hereby permitted to be received into the warehouse in your charge, to be used therein in connection with the manufacture of articles as authorized by law.

Port Director

자료: 19 CFR §19.14(c)

- 또한 보세공장 운영인은 물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월별명세서를 매월 말에 제출해야 함<sup>111)</sup>
- 명세서는 제조공정에 표시된 각 창고의 항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sup>111)</sup> 19 CFR §19.14(e)

나) 작업의 범위

- 보세공장에서 수행되는 작업의 범위에는 물품의 제조뿐만 아니라 제조된 물품의 포장이나 라벨링 작업을 포함하며, 증류주 및 와인을 가공하거나 주류의 알코올 도수를 낮춰 병입하는 작업이 포함됨<sup>112)</sup>

3) 화물관리 및 장치기간

- 보세공장 운영인은 운영인의 책임 및 감독 규정(19 CFR §19.4(b)) 및 기록보관 요건(19 CFR §19.12)을 준수해야 함<sup>113)</sup>
  - 기록보관을 목적으로 보세공장 운영인은 매뉴얼 또는 자동화된 재고관리 및 보관 체계를 선택하거나 매뉴얼과 자동화 체계를 결합한 형태(Record keeping System)를 갖추어야 함<sup>114)</sup>
- 이에 따라 보세공장 운영인은 보세공장으로의 물품의 이동과 보세공장 내에서의 물품의 이동 상황에 대한 모든 기록을 재고관리장부와 회계장부에 기록해야 함<sup>115)</sup>
- 또한 보세공장 운영인은 운영인에게 요구되고 있는 연간 제출서류와 연간 재고조사를 수행해야 함<sup>116)</sup>
  - 연간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운영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CBP양식(CBP Form 300)에 따른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종료 일로부터 5년간 파일에 보관해야 함<sup>117)</sup>

---

112) 19 U.S.C. §1311

113) 19 CFR §19.13a

114) 19 CFR §19.12

115) 19 CFR §19.13a(a)

116) 19 CFR §19.13a(b)

117) 19 CFR §19.12(g)

- 재고조사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CBP에 조사일자를 통지하고 CBP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함<sup>118)</sup>
- 보세공장 내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을 충분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여 세관에 제출한 제조 공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세관에 상품의 사용과 처분을 감사(audit)할 수 있도록 해야 함<sup>119)</sup>

#### 4) 관세담보 및 기타

##### 가) 관세담보

-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원재료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보세공장 운영인은 세관에 관세담보를 제공해야 함<sup>120)</sup>
  - 미국의 관세담보제도는 수입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서(Bonds)와 기타 담보증권을 정부에 제공하는 관세보증제도(Customs Bonds)를 기초로 하고 있음<sup>121)</sup>
  - 수입자가 수입한 물건은 일차적으로 관세의 담보물이 되나 청산제도에 따른 관세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미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증받은 증권으로 담보물이 대체됨<sup>122)</sup>
  -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관은 수입되는 물품이 통관함에 반입될 때 수입업자는 추산세액(estimated duties)을 예치(deposit)하여야 함<sup>123)</sup>

---

118) 19 CFR §19.12(d)(5)

119) 19 CFR §19.13a(c)

120) 19 CFR §19.14(b)

121) 정재호·김태훈, 『주요국의 관세담보제도 실태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7. 11., p. 47.

122) 정재호·김태훈(2007), p. 47.

123) 정재호·김태훈(2007), p. 48.

- 이에 따라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수입 물품을 보세공장으로 반입하기 전에 기본 수입 및 담보 규정(19 CFR §113.62)에 명시된 CBP양식(Customs Form 301)에 따른 보증금이 제출되어야 함
- 수입자는 관세 등 제세 납부, 수입 관련 요건의 준수, 물품 검사, 법규정 준수 등의 의무가 있음<sup>124)</sup>

나) 기타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은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된 시가와 선박용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나 재료를 수출 또는 선적하는 때에는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함<sup>125)</sup>
-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출(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반입 당시의 상태, 수량, 중량에 대해, 반입 당시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 부과 후 국내로의 반출(수입)이 허용됨<sup>126)</sup>
- NAFTA 대상 등의 물품은 관세 부과 없이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출(수입)될 수 있음
- 보세공장에서 생성된 폐기물 및 부산물은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될 수 있음<sup>127)</sup>
- 납세신고서(Customs Form 750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양식을 사용하고 폐기물 및 부산물과 이를 생산한 수입 원재료를 자세히 설명해야 함<sup>128)</sup>

---

124) 19 CFR §113.62

125) 19 CFR §19.15(a)

126) 19 U.S.C. §1311

127) 19 U.S.C. §1311

128) 19 CFR §19.15(d)

## 2. 일본의 보세공장제도

### 가. 관련 규정

- 일본의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가공 또는 그것을 원료로 제조, 개조, 분리, 그 밖의 가공 등의 보세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세관장이 허가한 곳을 말함<sup>129)</sup>
- 일본은 보세공장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내자원이 부족하므로 원료품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구하고 그 제품을 반송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보세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국내에서 인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입 촉진을 포함한 국제무역의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음<sup>130)</sup>
- 일본의 보세구역제도는 「관세법」 제4장 보세지역 제1절에서 제6절까지 규정하고 있음
  - 제1절 총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보세장치장, 제4절 보세공장, 제5절 보세전시장, 제6절 종합보세구역을 규정
-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56조에서 제62조까지 보세공장의 허가, 외국화물 장치기간, 보세작업의 신고, 보세작업의 납세신고 특례, 보세공장 외 보세작업, 지정 보세공장의 간이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제45조에서 제51조까지 보세작업의 신고, 보세작업에 의해 제조된 외국물품, 내외국물품 혼합사용승인 신청 등, 보세공장 외 보세작업의 허가, 지정보세공장의 간이절차, 기장의무, 보세장치장에 관한 규정의 준용, 보세장치장에 관한 규정의 준용, 보세공장의 허가의 특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129) 「관세법」 제56조

130) 관세청 일본관세연구회, 『일본세관 연수원 교재 I』, 2012, p. 142.

- 그밖에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기본통달」에서 보세공장 허가요건, 원재료, 화물 관리, 장치기간 등의 보세공장제도 전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나. 보세공장제도

### 1) 허가요건 및 허용업종

#### 가) 허가요건

- 일본의 보세공장은 외국화물인 원재료를 사용하여 그 제품을 반출할 것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화물의 장치 및 가공제조의 관리형태 등이 세관의 감시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공장에서의 가공제조 기간, 반출되는 제품의 수량 및 세관과 공장 소재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보세공장을 허가하고 있음<sup>131)</sup>
  - 제품이 반출되지 않더라도 공장에서 제품의 용도, 작업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특히 보세공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세관의 감시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세공장을 허가함
  - 상기에 해당되는 공장 가운데 외국화물에 대하여 가공 또는 제조과정 전부를 「관세법 기본통달」 제61조(보세공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에서 규정한 보세공장의 보세작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작업형태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세공장을 허가함
- 보세공장의 허가는 외국물품인 원료품 및 제품의 장치시설 또는 가공제조 등의 시설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함<sup>132)</sup>
  - 또한 선박을 제조하는 보세작업으로 진수 후에 의장(도장)을 하는 경우 점용수역에

131) 「관세법 기본통달」 제56-1조

132) 「관세법 기본통달」 제56-5조

대해서는 이를 보세공장에 포함하며, 이러한 경우 「항만법」, 「하천법」의 규정에 따라서도 각각의 허가가 요구됨

- 보세공장 허가신청자는 보세공장 허가신청서에 신청자의 신용상태를 증빙하는 서류와 공장의 도면 및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허가한 경우 세관은 보세공장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함<sup>133)</sup>
  -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신용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공장의 도면 및 등기사항 증명서로 함<sup>134)</sup>
    - 단, 신청과 관련하여 공장에서 작업의 내용이 특수한 경우 및 제조수율 사정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작업공정도 및 제조설비 등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자의 신용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개인의 경우 납세증명서 또는 이들 서류 이외에 자산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각각 제출하게 함<sup>135)</sup>
  - 허가를 받고자 하는 공장도면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공장 배치도 및 입체도면을 첨부하여야 함<sup>136)</sup>
  
- 보세공장 허가기간은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sup>137)</sup>
  - 허가의 경신 시에 지정하는 경신의 기간에 대해서는 6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sup>138)</sup>
  
- 보세공장 허가 시에는 보세장치장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과하고 있음
  - 보세작업의 종류 또는 보세작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133) 「관세법」 제56조

134) 「관세법 기본통달」 제56-9조 (1)

135) 「관세법 기본통달」 제56-9조 (2)

136) 「관세법 기본통달」 제56-9조 (3)

137) 「관세법 기본통달」 제56-13조

138) 「관세법 기본통달」 제56-15조 (4)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sup>139)</sup>

- 보세공장의 명칭, 소재지, 기타 주요한 종업원(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상호 및 임원을 포함)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조건<sup>140)</sup>
  - 보세공장에 출입하는 화물 및 보세작업에 관한 장부를 기재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는 날까지(그 기간에 해당 장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받은 날까지의 사이) 보존하여야 하는 조건<sup>141)</sup>
  - 유제품, 사탕 등의 일부 물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보세공장에 대해서 국내로 반입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내국산 또는 수입허가를 완료한 원료를 사용 하여야 하는 조건<sup>142)</sup>
- 보세공장의 일괄 허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단일보세공장 특허에 해당함<sup>143)</sup>
- 허가를 받으려는 공장이 동일 기업체에 속하거나 동일 세관 관할 내에 있는 2개 이상의 공장인 경우 또는 동일한 공장이나 근접한 2개 이상의 공장이 상이한 세관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것인 경우로서 이러한 공장이 다음 각 조건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동일한 보세공장으로서 일괄하여 허가하는 것이 인정됨<sup>144)</sup>
    - 가공 또는 제조 공정상 각 공장을 통하여 일괄하여 보세작업이 필요할 것
    - 각 보세작업에 대하여 수량적인 파악이 제조공정 등에 따라 확실히 행하여지고 있을 것

139) 「관세법 기본통달」 제56-14조 (1)

140) 「관세법 기본통달」 제56-14조 (2)

141) 「관세법 기본통달」 제56-14조 (3)

142) 「관세법 기본통달」 제56-14조 (4)

143) 근접한 장소에 있는 2개 이상의 공장이 동일 기업체에 속하며 원재료와 제품을 일괄 수출입하는 경우 또는 제조가공의 공정상 일괄작업에 각 공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및 2개 이상의 공장이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통관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감시단속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해 관계세관과 협의하여 주공장 관할세관에서 단일보세공장으로서 특허할 수 있는데 이를 단일 보세공장이라고 함

144) 「관세법 기본통달」 제56-10조

- 이러한 경우 동일 공장 또는 근접하는 2개 이상의 공장이 다른 세관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관계 세관 사이에 협의를 한 후에 어느 쪽이든 1개 세관에서 허가를 하도록 하여야 함<sup>145)</sup>
- 보세공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공장에서 보세작업 목적이 다른 작업을 병행하여 하는 경우로 이들 작업을 하는 장소가 지역적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도허가의 보세공장으로 허가하여야 함<sup>146)</sup>
- 한편, 일본은 일반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보세작업이 조합의 공동 공장에서 행해지는 경우 그 공장을 보세공장으로 허가하고 있음<sup>147)</sup>
  - 외국물품인 원료 구입을 조합에서 일괄하여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세작업은 각 조합원의 공장에서 한 후에 그 제품을 조합제품창고<sup>148)</sup>에 집하하여 이를 조합명으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보세작업이 행해지는 조합원 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보세공장으로 허가할 수 있음<sup>149)</sup>
  - 단, 조합이 외국물품인 원료를 일괄구입 및 배분을 하고 이에 대해 보세작업 및 그 제품의 재반출을 조합원 각자가 하는 경우 보세작업을 하는 공장마다 보세공장의 허가를 받게 하여야 함<sup>150)</sup>

#### 나) 허용업종

- 일본은 보세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허용되는 작업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

145) 「관세법 기본통달」 제56-10조

146) 「관세법 기본통달」 제56-11조

147) 「관세법 기본통달」 일제56-12조 (1)

148) 조합이 제품 출하를 관리 통제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공장에 부속하는 제품 창고를 포함

149) 「관세법 기본통달」 제56-12조 (2)

150) 「관세법 기본통달」 제56-12조 (2)

- 일본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가공, 생산하는 주요 제품으로는 어패류 통조림, 과자, 강재, 전선, 선박, 자동차, 정밀기계, 토목기계, 공작기계, 석유제품, 섬유, 농약, 화학 제품, 필름 등이 있음<sup>151)</sup>

## 2) 원재료 및 작업의 범위

- 보세작업에 사용 가능한 외국물품은 직접 원료 및 작업공정 중에서 주원료에 직접혼합 또는 첨가하여 사용하는 소모적 보조원료(조제, 환원제, 용제 등)로 그 소비수량이 확실하게 파악 가능한 물품으로 함<sup>152)</sup>
  - 직접 원료의 경우 제품에 체화되는 모든 화물을 말함<sup>153)</sup>
  - 다만, 작업 공정 중에 사용하는 보조 원료로서 그 사용 수량이 불명확한 것 또는 소모되지 않는 것, 작업 공정 중에서 사용되는 연료, 압착 가스, 윤활유 등의 소모품, 보세공장용 기계, 공구, 사무용품 등의 설비용품 등에 대해서는 사용 전에 수입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sup>154)</sup>
- 보세작업에 사용 가능한 소모적 보조원료의 구체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도 추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성에 조회한 후에 처리 하는 것으로 함<sup>155)</sup>
  - 선박의 건조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페인트, 용제용의 신나
  - 비타민 A의 제조에 사용되는 리튬하이드라이드 및 금속 칼륨
  - 제강용 선철의 제조 시에 철광석의 가탄(加炭)을 하기 위하여 가용되는 코크스
  - 3, 4-치크놀프로피온아니르트 제조에 사용되는 3염화인 및 옥시린 염

151) 김영춘·최해범, 「보세공장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제12권 제3호, 2011. 8, pp. 25~52.

152) 「관세법 기본통달」 제56-2조

153) 「관세법 기본통달」 제56-2조 (1)

154) 「관세법 기본통달」 제56-2조 (2)

155) 「관세법 기본통달」 제56-3조

- 주석산-트랜스-1-메틸-2(2-(아루아제닐)비닐)-1,4,5,6-네트라이트로피리이진 제조에 사용되는 기산 메틸
- 또한 「관세법」 제56조 제2항(보세장치장으로 간주되는 허가)에서 규정하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 또는 수입의 허가를 받아 보세작업에 사용 예정인 원료품 이외에 이들 수입원료와 동종의 수입물품으로 수입허가를 받아서 그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 작업에 사용되는 물품을 포함하고 있음<sup>156)</sup>
- 보세공장은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채로 미납 물품을 장치할 수 있고 장치기간 중에는 관세가 유보된 상태로 개조, 분리, 가공, 제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인바, 보세공장에서 허용되는 작업의 범위도 이와 같음<sup>157)</sup>

### 3) 화물관리 및 장치기간

#### 가) 화물관리

- 보세공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보세공장에 있는 외국화물에 대한 장부를 마련하고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sup>158)</sup>
- 보세공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세공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기장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행하며, 전자적 기록도 가능함<sup>159)</sup>
  - 기장의 양식은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며, 영업상 장부에 따라 기장하는 것은 원래 지장이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소요의 사항을 추기하고 외국물품이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sup>160)</sup>

156) 「관세법 기본통달」 제56-16조

157) 「관세법」 제56조

158) 「관세법」 제61조3

159) 「관세법 기본통달」 제61의3-1조

160) 「관세법 기본통달」 제61의3-1조 (1)

- 예를 들면, 동일화물에 대해서 각 란에 기호를 기입할 필요가 없고 최초의 란에 기입한 것으로 충분함
- 지정보세공장 이외의 보세공장 기장은 보세작업 종료신고에 소요사항을 추기하고 이를 일괄 확인할 수 있음<sup>161)</sup>
- 원료품과 제품을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연도별 일련번호로 된 제조번호(공장 측이 작업계획에 근거하여 부착한 보세작업의 번호 또는 수주번호)를 각각 기재부분에 부기하도록 함<sup>162)</sup>
- 원료품의 사용연월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원료품 관리부서에서 제조를 위해 반출한 연월일로 함<sup>163)</sup>
- 기장은 매일의 실적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함<sup>164)</sup>
- 보세공장에서 원료품 및 제품의 수불 또는 공정의 관리에 관한 제조계획표, 입하전표, 창고출고전표, 작업일보 기타의 전표류는 이들 이외의 것을 구별하여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것과 함께 당해 허가에 관련한 공장 내에 보존하게 하여 필요시에 제시하도록 함<sup>165)</sup>
- 견본의 일시지출 시 내외자화물 혼합사용 및 보세공장 외 보세작업에 관련한 허가 또는 승인 또는 이들의 서류의 사본은 보세공장에 보존하게 하여 필요에 따라 제시할 수 있도록 함<sup>166)</sup>
- 장부를 전자적 기록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취급은 「관세법 기본통달」 제34의2-4조(전자적 기록에 의한 장부의 보존)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함<sup>167)</sup>
- 조선소 내 보세공장에서 외국국적 선박의 수리 개장용 자재 반입에 관한 장부 및 기장은 「관세법 기본통달」 제34의2-10조(외국적 선박의 수리, 개장을 위해 사용하는 자재의 반출입에 관한 장부 및 그 기장)에 준함<sup>168)</sup>

---

161) 「관세법 기본통달」 제61의3-1조 (2)  
 162) 「관세법 기본통달」 제61의3-1조 (3)  
 163) 「관세법 기본통달」 제61의3-1조 (4)  
 164) 「관세법 기본통달」 제61의3-1조 (5)  
 165) 「관세법 기본통달」 제61의3-1조 (6)  
 166) 「관세법 기본통달」 제61의3-1조 (7)  
 167) 「관세법 기본통달」 제61의3-1조 (8)  
 168) 「관세법 기본통달」 제61의3-1조 (9)

-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의 개시 및 종료 시점에 그러한 취지를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세관장이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제외함<sup>169)</sup>
- 보세작업 개시신고는 보세작업의 종류 또는 이들에 사용되는 원료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세관의 감시단속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할 필요가 없음<sup>170)</sup>
- 보세작업 개시 시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신고에 대해서는 보세작업 개시 신고서에 의하지 않고 구두 및 전화로 신고할 수 있음<sup>171)</sup>
- 보세작업 종료신고는 보세작업의 신고규정에 의해 보세작업 종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짐<sup>172)</sup>
  - 단, 보세작업 종료신고는 보세작업 단위로 행하게 하고, 보세작업이 종료한 경우 그 보세공장이 지정보세공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에 따라 현물확인을 하여야 함<sup>173)</sup>

#### 나) 장치기간

- 보세작업에 사용하는 외국화물 및 그것을 원료로 사용한 보세작업에 의한 제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해당 화물을 보세작업에 사용하는 것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함<sup>174)</sup>
- 보세공장에 장치승인을 받은 날이 다른 원료품을 동시에 사용하여 보세작업을 하는 경우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은 이들의 원료품 중에 가장 늦게 장치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 그 승인된 날부터 계산함<sup>175)</sup>
- 다만,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필요에 따라 장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sup>176)</sup>

---

169) 「관세법」 제58조

170) 「관세법 기본통달」 제58-1조 (1)

171) 「관세법 기본통달」 제58-1조 (2)

172) 「관세법 기본통달」 제58-2조

173) 「관세법 기본통달」 제58-2조 (1)

174) 「관세법」 제57조

175) 「관세법 기본통달」 제57-1조 (1)

176) 「관세법」 제43조의2 제2항

- 예를 들면, 선박건조와 같은 특수한 보세작업에서 2년간으로는 그 제조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및 제품을 반출하는 것은 명백하나 해외와의 거래관계로 보아 2년간으로는 반출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등
- 한편, 「관세법」 제62조(보세장치장에 대한 규정의 준용)에 규정하는 외국물품의 장치기간 연장절차는 다음과 같음<sup>177)</sup>
  - 외국물품의 장치기간 연장신청은 외국물품장치기간연장승인신청서 2통을 제출하게 하여 세관에서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중 1통에 승인날인하고 승인서로써 신청자에게 교부함<sup>178)</sup>
  - 연장을 확인하는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연장을 확인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는 때에는 세관장이 다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초 연장 절차와 같은 절차에 따름<sup>179)</sup>

#### 4) 관세담보 및 기타

- 일본의 경우 보세공장 외 보세작업의 허가에 대해서는 그 허가에 관한 외국화물의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sup>180)</sup>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인 외국화물의 반입승인이 된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함<sup>181)</sup>
  -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은 외국으로 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보세작업 후의 시황, 계약의 파기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반송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국내로 반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177) 「관세법 기본통달」 제62-1조

178) 「관세법 기본통달」 제62-1조 (1)

179) 「관세법 기본통달」 제62-1조 (2)

180) 「관세법」 제61조 제2항

181) 관세청 일본관세연구회, 『일본세관 연수원 교재 I』, 2012, p. 149.

- 보세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하는 원료품과 동종의 수입화물은 관세를 면제하며, 원재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입 후 3개월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제조, 가공, 개조, 분리 등의 보세작업을 하여 수출한 경우에 납부한 관세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함<sup>182)</sup>
- 보세공장에서 개조, 분리, 기타 수입을 제외한 보세작업에 대하여 외국화물과 내국 화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으로 봄<sup>183)</sup>
  -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화물과 내국화물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외국화물의 수량에 대응하는 것을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으로 봄<sup>184)</sup>
- 보세작업에서 발생한 미량의 부산물로 과세상 문제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인취 규정을 따름<sup>185)</sup>
  - 부산물의 품명, 수량을 기재한 양식에 따른 신청서 2통을 보세공장의 허가 경신 신청 시에 병행하여 제출하게 하여 세관에서 이를 인용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 1통을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개개의 인취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기장하도록 하여야 함

### 3. 대만의 보세공장제도

#### 가. 관련 규정

- 대만의 보세제도는 「관세법(Customs act)」(이하 「관세법」) 제3장 세금의 우대 제2절 보세 제58조에서 제62조까지 규정하고 있음

182) 「관세정률법」 제19조 제2항

183) 「관세법」 제59조

184) 「관세법」 제59조 제2항

185) 「관세법」 제61의3-2조

- 보세창고, 보세공장, 물류창고, 면세점에 대한 관세 환급 및 감면, 등록절차, 혜택, 제한, 물품의 처리, 통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59조에서 보세공장의 설립과 운영 및 혜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상에서는 보세공장의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간략히 설명하고 있으며 보세공장의 등록, 통관절차, 물품관리, 벌칙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세공장 관리규정」(Regulations Governing Customs Bonded Factories, 이하 「보세공장 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관세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만 관련 법규에 간략히 정리하였음
  - 수출 가공공장은 세관의 승인 및 감독하에 보세공장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보세공장에서 수출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위해 수입하거나 저장한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됨
  - 보세공장에서 수입하는 자가용 기계 및 장비 또한 관세가 면제되나 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기계 및 장비를 과세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납세자는 물품 수입에 관한 법령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함
  - 보세공장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제품 및 관세를 면제한 원료는 세관의 비준을 거쳐 물품 출고 형태에 따른 세금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고가 불가능함
  - 보세공장은 해당 세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자격, 조건, 자본 요구 사항, 신청절차, 설치 및 장비, 등록 및 모든 등록 변경, 인증서 신청 및 갱신, 처리, 관리, 통관, 보세 상품의 국내 판매에 대한 환급 가능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은 재무부에서 정함

- 「관세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밀수물품으로 취급하여 「밀수방지법」(The Smuggling Penalty Act)<sup>186</sup>에 따라 처벌됨<sup>187</sup>
  - 보세공장의 완제품 또는 면세원료를 공장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관세가 부과되는 영역으로 수출한 자가 「관세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사용기계·장비에 부과될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처벌됨
  - 「밀수방지법」에서는 물품 또는 과세 물품을 불법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한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 적용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그 밖에 「관세법 시행규칙」(Enforcement Rules of the Customs Act, 이하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및 자가사용 기계, 장비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관세법」에 따라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등록변경, 인증신청 또는 갱신, 보세공장의 설치 및 설비, 보세물품의 처리, 관리, 통관 또는 국내유통물품 납세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됨<sup>188</sup>
  - 세관은 해당 회사에 일정 기간 내에 그 행위를 시정하도록 경고하고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NTD<sup>189</sup>6,000 이상 NTD3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벌금 부과는 필요한 경우 반복될 수 있으며 3회 연속 벌금이 부과된 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세공장 사업 또는 월별 신고 특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186) 대만 국가법령센터,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C0000006>  
 검색일자: 2022. 1. 10.

187) 「관세법」 제78조

188) 「관세법」 제89조

189) New Taiwan Dollar, 이하 NTD

〈표 III-3〉 대만 보세공장 관련 규정 체계

법	조항	내용
관세법	제3장 특별관세 제2부 보세(제59조)	보세공장 일반
	제5장 벌금(제89조)	제59조 위반에 대한 벌금
밀수방지법	전체	관세법 제59조 제2항 위반에 대한 처벌
관세법 시행규칙	제3장 특별관세 제2부 보세(제49조)	보세공장 관련 용어 정의
보세공장관리규정	제1장(제1조~제3조)	일반
	제2장(제4조~제9조)	등록
	제3장(제10조~제27-1조)	공장규제
	제4장(제28조~제42조)	보세물품 통관
	제5장(제43조~제50조)	보세물품 통제
	제6장(제51조~제58조)	별칙
	제7장(제60조~제61조, 제59조 삭제)	보충조항

자료: 대만 국가법령센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나. 보세공장제도

### 1) 허가요건 및 허용업종

- 회사법에 따라 등록 및 설립되고 납입자본금이 NTD50,000,000 이상인 회사의 공장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세공장으로 허가받을 수 있음<sup>190)</sup>
  -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경우로 보세공장 신청 전 평균 3년 동안 손실이 없거나 또는 누적 손실이 있는 경우 자본금이 NTD50,000,000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
  - 또한 누적 손실을 공제한 후 자본금이 NTD50,000,000 미만이지만 회사가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기타 담보를 제공한 경우

190) 「보세공장관리규정」 제4조

- 회사가 체납된 세금이나 벌금이 없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담보 또는 보증을 제출한 경우
  - 세관의 통제가 쉬운 상태의 공장으로서 보안을 담당하는 관리인과 관리초소가 있는 경우
  - 수출 판매를 위한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와 공장에 안전시설이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세관의 검사에 따라 확인된 경우
  - 원자재 및 완제품의 보관에 적합하도록 검사를 거쳐 세관당국이 승인한 별도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부피가 크고 유해한 물품의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은 별도의 적절한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경우
  - 관련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대만 영토 내에 설립된 외국기업의 영업자금 중 실제로 송금·등록된 금액이 NTD50,000,000 이상이며 정식 등록 및 자격을 갖춘 공장이 있는 외국기업의 지점 또한 보세공장 등록승인을 세관에 신청한 경우
  - 세관은 통관의 자동화 또는 전산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 또는 관련 온라인 설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세공장의 공장건물 및 시설은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함<sup>191)</sup>
- 생산기계 및 설비의 설치가 이미 완료되어 생산을 즉시 개시하거나 이미 개시한 경우
  - 원자재 창고 및 완제품 창고는 강도·화재·수해방지 등 보관물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또한 통풍이 잘되고 사무 공간과 적절하게 분리되어야 함
  - 공장 구역을 외부 환경과 분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격리가 이루어져야 함
- 보세공장 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공장 소재지 지역의 세관에 제출해야 함<sup>192)</sup>

---

191) 「보세공장관리규정」 제5조

192) 「보세공장관리규정」 제6조

- 신청서(신청서에는 담당자의 회사명, 통일 일련번호, 공장등록번호, 회사주소, 자본금, 성명 및 신분증 번호, 전화번호, 공장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공장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공장등록번호 대신 공장등록신청서를 먼저 제출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장등록을 승인받아야 함
  - 신설공장의 경우 보세공장 설립에 대한 현장을 확인할 파견인력을 세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함
- 신청자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증 원본 및 사본
- 정관 및 이사회 및 감독 명부 각 1부, 제품 목록 사본 1부, 공장, 창고, 부피가 크고 무거운 원자재 보관소, 생산 기계 및 장비의 배치도 각각 1부
- 보세공장 인감등록증, 제품 생산 절차 브로셔 및 생산 공정의 각 개별 단계에서 사용할 원자재의 이름 및 수량, 공장의 원자재 및 기타 자재 관리 시스템에 관한 정보
- 과거 3년간 CPA 인증 재무제표(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존속기간으로 함)
- 보세창고 공장건축사용허가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과 그 사본, 임대 계약서 및 보세공장이 임대한 공장 건물과 관련된 사본 및 임대한 공장 건물의 소유자가 발행한 임대 계약서에 소유자의 동의가 포함된 약속 서신, 해당 보세공장이 비활성화되었을 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해당 공장에 최소 6개월 동안 보관될 수 있어야 함
- 세관의 승인 및 등록을 받기 전에 보세공장 등록 신청 시 자가용 기계 또는 장비를 사전에 수입할 필요가 있다면 공장임시 관리번호를 신청하고 수입 관련 세금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하여 통관할 수 있음
  - 해당 보증금은 보세공장 등록 승인을 받은 후 세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세공장 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이와 관련한 수입 관련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해 보증금을 차감할 수 있음
- 보세공장은 「보세창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Regulations Governing the Establishment and Control of Bonded Warehouse)에 따라 공장 구내에 사설 보세창고의 설치를 세관에 신청할 수 있음
- 보세공장에 설치된 사설보세창고는 같은 공장건물 내의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야 함

- 세관은 신청서류가 심사에 합격한 날 다음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세관원을 파견하여 공장을 검사하고, 공장이 검사를 통과한 후 2일째에 보세공장 등록증을 발급함<sup>193)</sup>
- 보세공장 운영인은 회사명, 주소, 담당자, 사업항목, 공장주소, 납입자본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의 사본을 해당 세관에 제출해야 함<sup>194)</sup>
  - 다만, 사업품목 또는 공장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회사명 또는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한 보세공장은 변경등록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담당 세관에 연락하여 변경 등록을 완료해야 함
- 대만의 경우 보세공장의 허가 업종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2) 원재료 및 작업의 범위

- 대만은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및 자가 사용기계, 장비에 대해 일부 정의하고 있음<sup>195)</sup>
  - 우리나라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원재료에 품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관세법」 제59조 제1항에서 언급하는 원재료는 수출품의 구성요소 또는 수출품의 구성요소는 아니나 직접 사용에 필수적인 재료로서 제조과정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야 함
  - 「관세법」 제59조 제3항에서 언급하는 자가용 기계는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를 의미하며 장비는 자체 사용 기계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장비, 기구 및 부품으로서 소모성 재료 또는 간접 재료를 제외함

193) 「보세공장관리규정」 제7조

194) 「보세공장관리규정」 제7조

195)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 기업이 보세공장 허가를 받아 세관의 통제하에 있게 되었거나 보세공장에서 새로운 물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물품 단위당 수입 원재료 사용계획서 (Schedule of Raw Materials Used Per Unit of Product)를 제출하여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sup>196)</sup>
  - 물품 단위당 수입 원재료 사용계획서에 품명, 사양, 단위, 수량(실제로 사용된 수량 및 소모량), 모델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
  - 물품 단위당 수입원재료 사용계획서는 세관이 검토 또는 승인한 두 번째 날부터 3년 동안 유효함
  - 보세공장이 사용하는 원료의 가격, 특성 및 기능이 유사하고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취지의 명세서를 물품 단위당 수입 원재료 사용계획서에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함
  -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수량을 정산할 때에는 물품 단위당 수입원재료 사용계획서에 명시된 수량을 기본기준으로 함
  -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모계정을 신고할 수 없음
  - 원자재가 경제부 대외무역위원회에서 수입을 허가한 중국산이거나 재정부가 공표한 상계관세 또는 반덤핑관세 대상인 경우 보세공장은 특정 부품번호를 부여한 후 다른 출처의 재료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함
  -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에 재무부가 공표한 상계 또는 반덤핑 관세 대상이 되는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관의 검토를 위해 CPT Single Window(대만 통관단일창구)<sup>197)</sup>를 통해 세관에 전자적으로 전송한 후 검토를 받아야 함
  
- 보세공장 운영인은 원자재, 자가 사용 기계 및 장비를 수입함에 있어 통상적인 물품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자재 수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통관을 신청하여야 함<sup>198)</sup>

196) 「보세공장관리규정」 제10조

197) CPT Single Window, <https://portal.sw.nat.gov.tw/PPL/index> 검색일자: 2022. 2. 15.

198) 「보세공장관리규정」 제28조

- 세관은 필요시 세관원을 파견하여 보세공장의 구내에서 수입된 원재료에 대해 검사 후 승인할 수 있음
  - 자가 사용 기계 및 장비를 수입하기 전에 기계 이름, 모델 번호, 제품 규격, 수량(단위) 및 기타 관련 문서(카탈로그, 사용설명서, 기계처분계획, 기계설치계획, 보세물품 제조절차 등)의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여 승인받은 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보세공장이 수출물품 가공을 위해 국내에서 수입·구매한 원료가 보세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보세원료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재료용으로 유지 관리하는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수입된 지 5년이 넘고 고정자산의 개정된 내용 연수표(Revised Table of Service Life of Fixed Assets)에 기재된 기간을 초과한 보세창고의 자가 사용 기계 및 장비는 보세창고 재고 계정에서 공제되며 세관 감독 또한 면제됨
  - 6개월 동안 수출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자가 사용 기계 및 장비의 경우 한정된 기간 내에 실적 개선을 하지 못했을 시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수입 신청서와 다른 원자재, 자가 사용이 아닌 기계 및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 통관 승인 후 2일째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에 수입 관세 및 세금 납부를 신청하여 외국 상품에 대한 수입절차를 완료해야 함<sup>199)</sup>
- 보세공장에서 가능한 작업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보세공장관리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보세공장에 반입된 재료에 대해 제조, 가공이 보세공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음

### 3) 화물 관리 및 장치기간

- 보세공장 운영인은 원료·완제품 및 자가 사용 기계·장비용 장부와 원장을 각각 작성 후 창고에서 입고·출고되는 원자재 및 완제품의 수량, 창고에 보관 중인 수량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어야 함<sup>200)</sup>

199) 「보세공장관리규정」 제29조

200) 「보세공장관리규정」 제11조

- 보세공장 운영인은 또한 수시 검사를 위해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를 담당하는 세관에 동일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공 중인 반제품 및 제품의 기록을 보관해야 함
  - 보세공장 간 원자재 및 제품의 이동에 대해서는 관할 세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의 장부에 별도로 기록해야 함
  - 보세공장 간 원자재 및 제품의 이동에 관한 기록은 공장 단위로 기록하여 세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세물품이 입출고되면 입출고된 익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장부에 기록해야 하며 수입 검수가 끝난 뒤 세관에서 반출된 후 1주일 이내에 장부에 해당 내용을 기록해야 함<sup>201)</sup>
- 컴퓨터로 기록되는 장부와 원장 및 공장 외 처리 기록 카드 및 공장 출고 전표는 보세물품의 입출고인 경우 2일 이내에, 수입 물품은 세관통관 후 1주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sup>202)</sup>
  - 대체 원료, 완제품 및 자가 사용 기계 및 장비에 대한 보고서와 공장 외 처리 기록 카드 및 공장 출고 전표를 다음 달 20일 이전에 출력하여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sup>203)</sup>
  - 수출물품 가공을 위해 국내에서 수입·구매한 원료가 보세원료가 아니며 다른 보세 원료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재료용으로 유지 관리하는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함
  - 장부, 원장, 보고서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 참조용으로 전자매체에 저장할 수 있음
- 장부, 원장, 일람표, 보고서 등은 세관에서 규정한 형식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함<sup>204)</sup>

---

201) 「보세공장관리규정」 제18조  
 202) 「보세공장관리규정」 제11조  
 203) 「보세공장관리규정」 제11조  
 204) 「보세공장관리규정」 제12조

- 다만 보세공장이 자체 목적에 맞게 새로운 서식을 작성하거나 세관에서 표준화한 서식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당국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음
- 보세공장이 매년 작성·유지하는 모든 보세 관련 장부, 원장 등은 연간 재고처리 완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전표의 경우 3년간 보관해야 함<sup>205)</sup>
  - 보세공장은 연간 재고처리 완료 후 세관의 승인을 받은 전표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의 전자매체에 기록하여 동일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전표의 원본은 파기되지 않아야 함
  - 다만 세관이 법률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동안 언제든지 또는 수시로 이러한 전표나 관련 문서의 사본을 요구할 시 보세공장은 해당 문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감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감독 세관은 필요에 따라 보세 장부, 보세 작업과 관련된 기록 및 명세서를 감사하는 것 외에도 별도의 승인을 받은 세관원으로 하여금 기타 회계장부, 명세서 및 증명서를 열람 또는 감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보세공장에 저장된 보세물품은 세관당국이 승인한 창고에 일련번호로 보관되며 보세공장에 작업이 없을 시 출입을 통제함<sup>206)</sup>
  - 작업이 10일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는 관할 세관에 보고하여야 함
- 수출 가공공장이 보세공장으로 허가받을 시 세관당국이 지정한 날짜에 세관원과 보세공장직원은 함께 재고조사를 실시함<sup>207)</sup>
  - 보세공장으로 허가를 득한 후 재고조사는 1년에 1회, 전년도 재고 조사일을 기준 10~14개월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세관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도 있음

---

205) 「보세공장관리규정」 제13조

206) 「보세공장관리규정」 제14조

207) 「보세공장관리규정」 제20조

- 재고 조사 이후 부정확한 기록이나 누락이 발견될 때에는 관련 보세물품 사용 전에 보세공장의 재점검 및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사 완료 후 2주 후부터 접수된 신청은 접수되지 않음
  
- 재고 조사 후 보세공장 재고의 실제 수량이 장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따라 처리함<sup>208)</sup>
  - 장부보다 부족한 실제 재고의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로 적을 시 수입관세의 추가 납부는 면제됨
  - 다만 부족한 실제 재고가 오차범위를 넘을 경우 발생 2일째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에 보고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한 수입관세 및 부과금을 가산함
  - 실제 재고가 장부에 기록된 것보다 오차범위 이상으로 많을 경우 세관에 보고하고 사유를 파악해야 함
  - 완제품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 양의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물품 단위당 수입 원재료 사용계획서를 수정해야 함
  
- 관할 세관은 다음의 내용을 감사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세관원을 보세공장에 파견할 수 있음<sup>209)</sup>
  - 보세공장의 장부 및 명세서는 물론 생산 공정의 진행 상황, 원자재 창고 및 완제품 창고의 재고, 자가 사용 기계 관리 상황 등을 점검·검사함
  - 물품 단위당 수입 원재료 사용계획서 및 비보세품에 사용되는 원자재 사용량 일정을 검사하고 연간 재고 보고 및 내용을 검사함
  - 보세공장과 공동으로 보세물품에 대한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 재고 조사를 이행함
  - 특별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는 보세공장의 부산물, 자가 사용 기계 및 장비, 불량 제품의 파기를 감독함

---

208) 「보세공장관리규정」 제21조

209) 「보세공장관리규정」 제25조

- 새로 설립되거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통제 및 감독이 필요한 보세공장을 지원 및 조력함
- 보세공장에 대한 통제 및 감독과 관련된 기타 활동에 대한 감사 및 검사를 이행함
- 세관은 보세공장 관리에 대해 성과등급제를 채택할 수 있음<sup>210)</sup>

□ 별도의 화물에 대한 장치 기간은 두지 않고 있음

#### 4) 관세담보 및 기타

□ 대만의 경우 보세공장 물품 반입에 대한 담보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담보를 요구하고 있음<sup>211)</sup>

- 보세공장을 설립한 회사가 법원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았고 세관이 이 회사의 등록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장의 보세물품은 담보를 설정하고 세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물품 사용은 1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세관은 수입 관세 및 그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해 담보를 상계함
- 과학공원, 기술산업단지, 농업생명공학공원, 자유무역지대 또는 기타 보세공장의 기업에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담보를 설정한 후 감독 세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반출 승인 1년 이내에 관련 제품의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담보로 제세금을 상쇄함

□ 보세공장의 보세제품은 수입용으로 간주하나 보세제품의 국내 판매가 필요한 경우 주관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sup>212)</sup>

210) 「보세공장관리규정」 제27조

211) 「보세공장관리규정」 제26조

212) 「보세공장관리규정」 제40조

- 국내 판매를 승인받은 보세공장의 가공제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은 단독으로 또는 구매자와 공동으로 해외물품 수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 관세 및 제세금이 납부되고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해당 물품은 보세공장에서 방출할 수 없음
  - 국내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이 조립용 싱글 중간재인 재료 50% 이상으로 제조된 제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제품의 과세가격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과됨
  - 내수 판매형 보세물품을 구매한 기업은 관할 세관에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70%에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함
  - 보세품에 비보세 원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해당 물품 제조에 사용된 보세 원재료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함
- 보세공장의 국내 판매형 보세제품은 수출용으로 재처리되며, 해당 제품은 「수출품 원재료에 대한 관세 및 세금 상계 및 환급 규정」(Regulations Governing the Offsetting or Refund of Duty and Taxes On The Raw Materials Of Export Products)<sup>213)</sup>에 따라 관세 및 세금을 상계하거나 환급이 가능함
- 다만, 관세 환급 대상품목에서 제외된 제품 또는 물품에는 적용이 불가능함
- 보세공장은 비보세 물품(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수입한 자재를 사용하여 세관을 통과하여 생산한 물품) 또는 과세구역에서 구입한 자재를 사용할 시에는 세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세관의 감독하에 보세공장이 중국에서 「대만과 중국과의 무역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위원회에 신청한 원자재, 부품 및 부품, 자가 사용 기계 및 장비 또는 제품을 수입할 수 있음<sup>214)</sup>

213) 대만 국가법령센터,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50023>  
 검색일자: 2022. 1. 11.

214) 「보세공장관리규정」 제60조

- 보세공장에 있는 불량 보세품, 부산물, 스크랩, 폐기물, 자재의 비활성 재고 및 자가 사용 기계 및 장비의 스크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함<sup>215)</sup>
- 대만의 경우 불량 보세품, 부산물, 스크랩, 폐기물, 자재의 비활성 재고 및 자가 사용 기계 및 장비의 스크랩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정의하고 있음
    - 불량 보세품: 고객의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도 제품의 기능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가 가능한 불량 제품
    - 부산물: 그 밖에 대상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 스크랩: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 스크랩 및 추가 자재로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
    - 폐기물: 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 불가능한 물질
    - 공장의 생산계획 변경, 제품 종류 변경, 해외 주문 취소 또는 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보세 원자재 또는 재고가 6개월 이상 경과한 보세 원자재
    - 자가 사용 기계 및 장비의 스크랩: 자가 사용 기계 및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가능성이 없거나 수리비용이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자가 사용 기계 및 장비
  - 이용가치가 있는 품목은 종량세 또는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세액을 결정한 후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세관의 감독하에 파기한 다음, 그 잔여 가치에 대해 세관에 관세와 세금을 납부한 후 보세공장에서 반출할 수 있음
  - 이용가치가 없는 물품은 관세청의 감독하에 또는 해당 관세 및 당국의 공동 감독하에 파기함

---

215) 「보세공장관리규정」 제44-1조

## 4. 인도의 보세공장제도

### 가. 관련 규정

- 인도를 세계적으로 제조업 중심지로 홍보하려는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하나로 관세 및 간접세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이하 CBIC)에서는 제조 및 다른 작업을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와 자본재를 사용한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관세를 유예하는 제도(Bonded Manufacturing Scheme)를 도입하게 되었음<sup>216)</sup>
- 해당 제도를 통해 관세청장은 모든 승인을 위한 단일 연락 창구 역할을 하며 개인 보세창고의 인허가 및 제조 및 기타 사업의 허가를 위한 공통신청겸 승인서로 신청을 용이하게 함
- 또한 자본재 및 비자본재(원자재, 부품 등)는 통관 또는 소비 전까지 제한기간 없이 창고에 보관이 가능하며 인도 내 지역적 제한 없이 새로운 제조시설을 설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보세 제조시설로 전환할 수 있음
- 자본재는 물품의 대체, 현대화, 기술 확장, 개발 등을 포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공장, 기계, 장비 또는 부속품, 포장기계 및 장비, 내벽 내화제, 냉동장비, 전기발전기, 전동동구, 촉매, 시험 및 연구개발, 품질 및 오염관리를 위한 장비와 도구를 의미함<sup>217)</sup>
- 디지털로 단일화된 형식을 적용하여 제조 및 기타 작업의 모든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음
- 해당 제도에 관한 규정 위반 또는 방조(abet)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됨<sup>218)</sup>

216) 인도 투자진흥청, <https://www.investindia.gov.in/bonded-manufacturing>, 검색일자: 2022. 1. 19.

217) CBIC, "Notfn. No. 14/09-Cus., dated 19.2.2009 as amended by 123/09, 93/10, 40/11, 37/12, 40/12, 50/12, 4/13, 20/13, 5/15," 2009. 19. 2., p. 1130.

218) 「보세창고에서의 제조 및 기타작업에 대한 규정」 제19조

- CBIC에서는 「관세법」 제157조, 제143AA조, 제65조에 의거하여 2019년 10월1일 「보세창고에서의 제조 및 기타작업에 대한 규정」(Manufacture and Other Operations Regulations)을 발표하였음
  - 「관세법」 제157조에서는 규정 제정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 「관세법」 제143AA조에서는 「관세법」의 다른 조항에 포함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나 수출입 업자의 등급 또는 상품의 범주, 상품 운송 방식 대해 다음 내용을 만족시키기 위해 별도의 절차 또는 문서를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입 및 수출 문서의 투명성을 유지
    -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해 반입된 상품의 통관 또는 반출 촉진
    - 수입 또는 수출 상품의 통관 거래비용 절약
    - 세관 통제와 합법적 거래 촉진의 균형 유지
  - 「관세법」 제65조에서는 창고의 제조 공정 또는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개인 창고 허가규정」(Private warehouse Licensing Regulations, 2016, 이하 개인창고 허가 규정)에서는 개인 창고 허가신청자의 조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으로 제조 및 기타작업 허가에 대한 내용을 같음함
  
- 인도는 우리나라의 특별보세공장과 유사한 특수보세창고를 두고 있으며 「특별보세 창고에서의 제조 및 기타작업에 대한 규정」(Manufacture and Other Operations in Special Warehouse Regulations, 2020)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귀금속, 기내식, 특정권한을 가진 외국인의 물품, 면세물품 등에 대한 제조 및 기타작업을 허가하고 있음

〈표 III-4〉 인도 보세창고(제조 및 기타작업) 관련 규정 체계

법	조항	내용
관세법	제10장 보세 제57조 ~제73A조	보세구역별 지정요건, 창고별 면허 조건, 보세물품 처리, 수출용물품의 통관, 내수용 물품의 통관, 물품의 반출 등
	제65조	보세물품에 대한 제조 및 기타 작업
	제16장 범죄 및 기소 제132조~제140A조	위반에 대한 몰수, 형벌, 벌금 등
보세창고에서의 제조 및 기타 작업 허가규정(Manufacture and Other Operations in Warehouse Regulations, 2019)	제1조~제20조	면허(허가), 창고조건, 관리인, 기록관리 등
Circular No. 34/2019-Cus dated 01.10.2019	보세창고에서의 제조 및 기타 작업규정에 대한 규정 공고	
특별보세창고에서의 제조 및 기타작업에 대한 규정(Manufacture and Other Operations in Special Warehouse Regulations, 2020)	제1조~제21조	면허(허가), 창고조건, 관리인, 기록관리 등
Circular No.36/2020-Customs dated 17-08-2020	특별보세창고에서의 제조 및 기타작업에 대한 규정 공고	
자가용 창고 면허 규정 (Private warehouse licensing regulations, 2016)	제1조~제9조	허가요건, 허가취소 등

자료: CBIC, <https://taxinformation.cbic.gov.in/content-page/explore-act>, 검색일자: 2022. 2. 4.  
의 규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나. 보세공장제도

### 1) 허가요건 및 허용업종

- 세관장 또는 감독관의 허가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운영인은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창고에서 제조 또는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sup>219)</sup>
  - 해당 창고는 잠금장치로 관리해야 하며 관리인 이외의 사람은 허가 없이 해당 창고에 들어가거나 물품을 반출할 수 없음<sup>220)</sup>
  
- 제조 및 기타 작업 창고 운영인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음<sup>221)</sup>
  - 「관세법」 제58조 및 「개인 창고 면허 규정」에 따라 자가용 보세창고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로 「관세법」 제65조 및 「제조 및 기타 작업 허가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관세청장 또는 관세차장(Principal Commissioner of Customs or the Commissioner of Customs)이 명시하는 해당 약관을 준수하기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자
  - 인도 국적의 개인 및 등록된 법인으로 관세국장 및 관세부국장이 지정한 은행으로부터 지불능력증명을 제출한 자
  - 다만 지불능력증명은 중앙정부 또는 주정부 또는 연방 영토의 사업 수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제조 및 기타작업 창고 운영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음<sup>222)</sup>
  - 법원 또는 재판소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자
  -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중앙소비세법」(Central Excise Act) 또는 「재정법」(Finance Act) 제5장에 따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219) 「관세법」 제58조 제1항

220) 「관세법」 제58조 제2항

221) 「자가용 창고 허가규정」 제3조 제1항

222) 「자가용 창고 허가규정」 제3조 제2항

- 관할 법원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선언한 자
- 관세청장 또는 차장이 허가 요청자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 개인 창고의 부지 또는 건물이 과세물건의 안전한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담당 세관원이 개인 창고의 부지 또는 건물에 대해 일반적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파산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
  - 형사소송이 계류 중이며 관련된 범죄는 면허를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필요에 따라 주 관세청장 또는 관세차장은 면허가 부여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면허 신청자에게 다음 내용의 준수를 요청할 수 있음<sup>223)</sup>
  - 지정된 디지털 형식으로 물품 수령 및 제거 계정을 유지하고 이를 매월 담당 세관 직원에 제출해야 함
  -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담보를 제공해야 함
  - 원자재 및 최종 제품에 대한 표준 투입 및 생산 물량 기준 및 변경 시 바뀐 기준에 대해 통보해야 함
- 창고 운영인은 본인을 대체하여 작업 및 통관을 이행할 숙련된 관리인을 지정해야 함
  - 창고 관리인은 창고 운영인을 대신하여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고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전자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허가 기관에서 디지털 서명을 받아야 함
  - 또한 창고 관리인은 본인이 서명하는 신고 및 보관 계정의 정확성을 스스로 감독해야 함
- 창고 운영인의 면허는 갱신할 필요가 없으며 「관세법」 및 관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차장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면허를 득한 창고 운영인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창고를 설치해야 함

223) 「보세창고에서의 제조 및 기타작업에 대한 규정」 제4조 제2항

- 부지 또는 건물이 관세 보세창고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표지판을 두어야 함
  - 물품의 수령, 보관, 운영 및 반출에 대한 전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창고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물품의 보안을 확보하며 세관원에 의한 본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기타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함
  - 그러나 허가 조건은 완전히 밀폐된 구조를 전제로 하지는 않으며 상품의 특성, 운영 및 산업에 따라 일부 장치는 완전히 폐쇄된 구조물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음
- 제조 및 기타 작업을 위한 보세창고의 허가는 최종 상품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지 또는 수출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내수시장에 판매되는 상품만을 제조하는 공장 또한 보세창고에서 제조 및 기타 작업을 신청할 수 있음<sup>224)</sup>
- 국내 시장에서 판매될 상품만을 생산하던 기존 공장 또한 보세창고에서 제조 및 작업에 대한 요청이 가능함
- 허가업종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두지 않고 있음

## 2) 원재료 및 작업의 범위

- 원재료 및 투입물(input), 자본재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으며 모든 제조 공정 또는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타 작업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고 있음<sup>225)</sup>
- 수출 또는 내수물품으로 수입할 시 통관할 수 있는 물품 수량에 대한 제한 또한 두지 않고 있음
  - 공공창고에서는 제조 및 기타작업을 이행할 수 없으며 자가용 보세창고에서만 해당 작업이 가능함

224) CBIC, "F.No.484/03/2015-LC(Pt)(undated version)," 2020. 10. 27., p. 2.

225) CBIC, "F.No.484/03/2015-LC(Pt)(undated version)," 2020. 10. 27., pp. 1~2.

- 다만 위험물품의 경우 제조 및 기타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제한 물품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확인 후 보세창고에 반입 가능함<sup>226)</sup>

### 3) 화물 관리 및 장치기간

- 제조 및 기타작업 창고 운영인은 다음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음<sup>227)</sup>
  - 기록 및 장부는 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정확하게 보존되어야 하며, 세관원 또는 법에 의하여 인가된 다른 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창고로 또는 창고에서 물품의 반입, 취급, 보관 및 반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세관원에 동일한 내용을 제공해야 함
    - 반입된 물품 각각에 취해진 행위, 작업, 운영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함
    - 현행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창고 물품의 샘플 추출 기록을 일정 시간 보관해야 함
    - 세관신고서, 운송 문서, 창고에서의 물품 이동양식, 선적 계산서 또는 수출증권, 창고로 또는 창고에 반입 및 반출을 증명하는 기타 문서, 「관세법」 제59조에 따른 관세채권 등의 사본을 보관해야 함
  - 보세창고 운영인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도난, 숙련도 또는 컴퓨터 오작동으로 인한 기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창고 이외의 장소에 관련 기록에 대해 디지털 사본을 보관해야 함
    - 물품의 반입, 취급, 보관 및 반출 물품에 취해진 행위, 작업, 운영창고 물품의 샘플 추출 기록, 세관신고서, 운송 문서, 창고에서의 물품 이동양식, 선적 계산서 또는 수출증권, 창고로 또는 창고에 반입 및 반출을 증명하는 기타 문서, 관세채권 등의 사본 등
- 보세창고 운영인은 창고 내 물품의 반입, 보관, 운영 및 반출에 대한 월별 보고를 해당 월의 마감 후 10일 이내에 세관원에게 제출해야 함<sup>228)</sup>

226) CBIC, "F.No.484/03/2015-LC(Pt)(undated version)," 2020. 10. 27., p. 5.

227) 「보세창고에서의 제조 및 기타작업에 대한 규정」 제17조

228) 「보세창고에서의 제조 및 기타작업에 대한 규정」 제17조 제4항 및 제18조

- 세관원의 감사 빈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아 언제든지 감사가 가능하도록 함
- 인도는 내수시장 판매분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100% 수출하는 수출전용 기업(Export Oriented Units, 이하 EOU)에 대해서 보세창고 장치기간을 두었으나 제조 및 기타작업과 관련하여 제도를 개정하며 장치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였음<sup>229)</sup>
- 「관세법」 제65조에 따라 제조 또는 기타 작업이 허용된 수출전용기업 또는 전자하드웨어 기술단지 단위, 소프트웨어 기술단지 단위 또는 창고에서 사용하기 위한 자본재 및 자본재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음<sup>230)</sup>
- 다만 기타 물품의 경우 담보제공 후 담당세관원이 창고에 보관할 목적으로 세관출장소(customs station)<sup>231)</sup>에서 물품의 반출을 허용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1년의 장치기간을 설정함
  - 해당 물품의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차장은 충분한 사유가 입증될 시, 해당 물품이 창고에 보관될 수 있는 기간을 한 번에 1년 이하로 연장할 수 있음
  - 해당 물품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차장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보관기간을 짧게 단축할 수 있음

#### 4) 관세담보 및 기타

- 「관세법」 및 보세창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해야 함<sup>232)</sup>
- 관세국장 및 관세부국장은 특정기한 동안 포괄적 담보를 허가할 수 있음
- 독촉고지에 표기된 날짜 당일 또는 이전에 부과된 모든 관세, 장치기간의 연장에 따라 지불되어야 하는 이자에 대해 담보를 설정함

229) 「관세법」 제61조(CBIC, <https://taxinformation.cbic.gov.in/content-page/explore-act> 상 개정내용 참조)

230) 「관세법」 제61조

231) 세계법제정보센터, 「인도 관세법」, 번역본, 2019., p. 6.

232) 「관세법」 제59조(관세액의 2배에서 증액하여 내용 개정)

- 해당 물품과 관련된 위반에 부과될 수 있는 모든 벌금에 대해 담보를 설정함
- 수입자가 제공한 담보의 경우 물품 양도 혹은 다른 보세창고로 물품의 이동이 발생하여도 지속적으로 유효함
  
- 반입되는 원자재 및 자본재에 대한 일반적인 세관 검사의 경우 위험의 징후가 발견될 시에 한 해 보세구역으로 반입 전 세관에 의한 물품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sup>233)</sup>
  
- 자본재의 경우 관세 유예 상태로 반입되며 내수용으로 반출되지 않는 한 관세 및 부가세(Integrated Goods and Services Tax, IGST)가 부과되지 않으며 내수용으로 반출 시에도 관세 및 부가세 유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자본재가 내수용으로 반입될 시 완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자본재에 별도로 관세가 부과됨
  - 자재는 수출 시 관세납부 의무가 종료되며 관세 유예에 대한 제한 기간은 두고 있지 않음
- 자본재의 경우 내수용으로 반입 시 감가상각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음
  
- 재화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모든 작업과정에서 폐기물(waste and refuge)이 있는 경우 다음에 따라 처리함<sup>234)</sup>
  - 작업에 따라 생산된 물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수출되는 경우 다량의 폐기물이 함유된 보세창고 장치물품의 수량에 따라 수입관세를 면제함
  - 작업에 따라 생산된 물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국내시장으로 반입되는 경우 다량의 폐기물이 함유된 보세창고 장치물품의 수량에 따라 수입관세를 부과함

233) CBIC, "F.No.484/03/2015-LC(Pt)(undated version)," 2020. 10. 27. p. 3.

234) 「관세법」 제65조

## IV. 국제비교

### 1. 업종제한

- 우리나라는 「관세법」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공장의 업종을 제한할 수 있고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은 보세공장 업종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 미국은 보세공장의 업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한 예외적인 규정이 존재함
  - 곡물로부터 증류된 원액(주정), 전분, 당밀, 설탕과 이들의 혼합물 또는 희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과 밀을 밀가루로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세가공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존재함
  
- 일본, 대만, 인도의 경우 보세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음
  - 일본의 경우에는 보세공장의 설립을 조합에도 허가하고 있고 별도의 업종제한도 없기 때문에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이 활성화되어 있음

## 2. 원재료 및 작업의 범위

- 우리나라는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작업의 범위에는 제조·가공하거나 수리·조립·분해·검사·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관세법 시행령」에서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한하고 있음
  - 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검사의 경우 2020년 고시 개정을 통해 바이오 신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보세작업의 범위에 원재료의 품질검사 공정을 포함한 바 있음
  
- 미국의 경우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작업의 범위에는 제조·가공뿐만 아니라 제조된 물품의 포장 및 라벨링, 증류주 및 와인의 가공, 주류의 알코올 도수를 낮춰 병입하는 작업이 포함됨
  - 원재료의 범위에 수입 원재료뿐만 아니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된 모든 포장, 커버, 용기, 라벨 등을 규정함
  - 다만 보세공장의 건설 또는 수리에 사용되거나 그 안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 기계, 장치는 과세보류가 되지 않아 일부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작업의 범위에는 제조·가공뿐만 아니라 개조, 분리하는 작업이 포함됨
  - 원재료의 범위에는 직접 원료 및 소모적 보조원료로 그 소비수량이 확실하게 파악 가능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어 일부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대만의 경우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작업의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해 제조·가공이 보세공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음

- 원재료의 범위에는 직접 사용에 필수적인 재료 및 직접 사용하는 기계 등을 규정함
- 인도의 경우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작업의 범위에 모든 제조 공정 또는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3. 화물관리

-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주요국에서는 보세공장 원재료의 재고관리를 위해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보세공장으로 반입하거나 수입되는 물품 및 작업의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한 장부를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산매체)를 통해 물품의 반출입사항, 잉여물품의 처리사항 등 보세공장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음
- 미국은 기록보관을 목적으로 보세공장 운영인은 매뉴얼 또는 자동화된 재고관리 및 보관 체계를 선택하거나 매뉴얼과 자동화 체계를 결합한 형태인 기록보관 체계를 통해 관리, 운영하고 있음
- 일본, 대만, 인도의 경우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를 통해 물품의 반입, 취급, 보관 및 반출 등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정해진 사항을 기록하고 있음

#### 4. 장치기간

- 조사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미국, 대만, 인도의 경우 물품 장치에 대한 제한 기간을 두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는 장치기간이 특허기간과 동일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2년의 장치 제한기간을 두고 있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보세공장 설치·운영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보세공장의 설치·운영특허 신청기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음

#### 5. 관세담보 및 기타

- 조사국 중 우리나라와 대만을 제외한 조사국은 관세 납부의 유예에 따라 관세 채권의 확보를 위해 담보를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부과될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보세공장 외 작업에 대해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음
  - 인도의 경우 부과될 관세액의 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음
  - 대만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담보를 요구하고 있음
- 기타에서는 앞서 비교한 업종제한, 원재료 및 작업의 범위, 화물관리, 장치기간, 관세 담보 등을 제외한 각국의 규정 중 예외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음
  - 대만은 텀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 물품의 별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세공장관리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재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일부 수입 시 면세하고 있었으나 인도 및 대만의 경우 전부 면세하고 있었음

〈표 IV-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세공장제도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대만	인도
업종제한	제한 있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원재료 및 작업의 범위	제한 있음	제한 없음 (일부 제한)	제한 없음 (일부 제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조, 가공, 수리· 조립·분해·검사	제조, 가공	제조, 가공, 개조, 분리	제조, 가공	제조 및 기타
화물관리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	기록보관 체계	장부기장 및 전자적 기록	장부 또는 자료보존 매체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
장치기간	특허기간과 동일	없음	2년	없음	없음
관세담보	없음	있음	일부	일부	관세액의 3배
기타	일부 시설제 관세 면제			- 덤핑 관면 규정 - 시설제 관세면제	시설제 관세면제

자료: 본문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V. 소결

### 1. 업종제한

- 주요국은 보세공장의 업종을 제한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보세공장 특히불허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에는 주로 식품가공업이 해당 되는데,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보세공장 생산제품의 가격경쟁력 혜택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의 발전과 수출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우리나라의 보세공장 업종제한 관련규정은 외국산 농림축산물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의 국내관행에 관한 권고관행 6과 상충될 여지가 있음
  -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의 국내관행에 관한 권고관행 6에서는 국내 가공절차를 수입물품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도록 권장하면서 국내에서 특정물품을 입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정물품의 수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각국에 권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보세공장 업종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보세공장제도 혜택을 이용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을 발굴하고 수출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세공장 업종의 다양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차적으로 보세공장 업종이 식품가공업종까지 확대된다면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하는 식품가공업의 육성과 나아가 빈번히 발생하는 일부 부정·불량 수입식품의 위해 요소로부터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일본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가공, 생산하는 주요 제품으로서 어패류 통조림, 과자 등의 식품가공업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음
- 또한 현행 특허업종은 업종제한에 해당하는 일부 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보세공장을 특허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무분별한 기업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양허세율을 적용받는 농산물 등의 제조·가공을 허용할 경우 세율 차이를 이용한 밀수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물품 통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보세공장 활성화를 통한 가공무역 육성과 국내 농·임·축산물 산업 보호의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한 여부·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임

## 2. 원재료 및 작업의 범위

- 우리나라와 주요국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과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및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 등을 포함하는 수준에서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등과 같이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하고 있음

- 특히 수출용 선박의 제조 공정인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류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보세공장 원재료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sup>235)</sup>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에서는 선박의 제조·가공 과정에 필수적인 공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고 있음<sup>236)</sup>
-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주요국에서는 보세공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작업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의 범위와는 달리 「고시」의 범위에서는 단순한 조립작업의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작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관세법」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반면 「고시」에서는 “간단한 셋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단순한 조립작업을 하는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이로 인해 보세공장의 작업의 범위가 축소되어 운영될 소지가 있으며 보세공장의 운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23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등 11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S1A0W6W2C5S1A0J5O8X1G7C0Q5E7](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S1A0W6W2C5S1A0J5O8X1G7C0Q5E7), 검색일자: 2022. 2. 16.

236) 국제법령정보시스템, (조심-2019-전-0136[심판]),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inspect\\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4&docu\\_no=464474&docu\\_kind=%EC%8B%AC%ED%8C%90&menu\\_gubun=mainTop100](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inspect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4&docu_no=464474&docu_kind=%EC%8B%AC%ED%8C%90&menu_gubun=mainTop100), 검색일자: 2022. 2. 16.

- 원재료 반입부터 제품생산까지 관세부과 유예를 통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보세공장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현행 원재료 및 작업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3. 관세담보

- 수입된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납부를 유예하는 보세공장의 특성상 관세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sup>237)</sup>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국 중 우리나라 및 대만을 제외한 주요국은 반입되는 원자재에 대해 관세담보를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은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요구하며, 일본은 장외작업에 한해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음
  - 인도의 경우 보세창고에서 제조 및 기타작업을 허가하면서 관세액의 두 배에서 세 배로 담보를 증액하였음
  - 대만의 경우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원장 및 장부(books and ledger)를 원료·완제품 및 자가 사용 기계·장비용 물품 각각에 대해 기록 및 비치해야 하며, 별도 승인을 받은 세관원이 기타 회계장부, 명세서 및 증명서를 열람 또는 감사할 수 있어 강도 높은 관리가 이루어짐(파산기업의 물품 사용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담보를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세담보의 제공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년 「관세법」을 개정하여 관세담보제도를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하였음<sup>238)</sup>

237) 정재호·김태훈, 『주요국의 관세담보제도 실태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7. 11., p. 14.

238) 기획재정부, 「관세법」(시행 2010. 1. 1.) (법률 제9910호, 2010. 1. 1., 일부개정) 개정·개정이유, 2010. 1. 1.

- 기존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에 대해 해당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관세포탈의 위험성이 높은 장외작업에 대해서도 담보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음
- 관세담보는 각국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나 우리나라 보세공장의 통관절차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되 관세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요국의 사례를 일부 참조하여 예외적으로 담보를 설정할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성실도와 신용도가 낮은 업체, 또는 보안이 필요한 물품 또는 작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현재 세관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AEO업체에 한해 사용신고, 보세운송신고,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의 특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혜택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음

## 4. 기타

### 가. 시설재 감면규정의 보완

- 우리나라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 및 장비 등 시설재에 대해 보세공장 반입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일부 시설재의 경우에 한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sup>239)</sup>

239)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의 22

- 「관세법」에 따라 보세공장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같은 법 물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경하며<sup>240)</sup> 물품과 그 경감률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sup>241)</sup>
  -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시설재용품 국내제작 곤란 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가 추천하는 물품이며 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함<sup>242)</sup>
- 조사국 중 인도와 대만의 경우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시설재에 대해서 「관세법」 및 보세공장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세관 확인만을 요건으로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면제하여 보세공장을 이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있음
- 가공무역을 지원하여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보세공장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대만이나 인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설재의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보세공장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통관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기계, 전자 등 제조업 중심의 업체가 보세공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설재 반입 허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받은 자로부터 해당 물품을 추천받는 별도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행정절차상 비용과 시간이 소모됨
- 다만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재료의 범위상 시설재에 관한 내용이 부재한바, 향후 각 국가들의 적용 내용 및 규정과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위반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40)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의 22

24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

24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 4

## 나. 덤핑 관련 보세공장 규정의 보완

- 덤핑방지관세 대상 물품이 원료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관세 유보 상태에서 수출품을 제조할 경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관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2010년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 관세부과 재심사 시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 피해 분석에 보세공장 반입물량을 반영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한 사례가 있었음<sup>243)</sup>
  -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 원심 조사개시 전인 2009년까지는 보세공장으로 반입되는 물량이 전혀 없었음
  - 그러나 조사개시 이후 수입·수요자들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고자 보세공장으로 전환하여 조사대상 기간(2010~2014년) 동안 국내에 수입 통관되는 물량은 감소하였고 보세공장 반입물량은 증가하였음
    - 국내 수입물량은 연평균 34.0% 감소하였으며 보세공장 반입물량은 연평균 14.8% 증가하였음
- 대만의 경우 「보세공장관리규정」에서 원자재가 재무부가 공표한 상계관세 또는 반덤핑 관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관리 및 세관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자재명세서에 재무부가 공표한 상계 또는 반덤핑관세 대상이 되는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CPT Single Window를 통해 세관에 전송 후 검토를 받아야 하며 보세공장에서 특정 부품 번호를 부여하여 별도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243)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30년사. 공정무역 질서 확립 30년을 담다』, 2017. 9., p. 198.

-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대만의 사례를 참조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반덤핑관세 대상 원자재에 대한 관리방법 및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덤핑방지관세 대상 물품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원료과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방향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료과세 또는 제품과세 중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참고문헌

-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 김동엽·정현주·최영준·황운섭, 『WTO 규범 하에서 관세 환급 및 보세공장제도의 적정운영 방안』, 경희대학교, 2003. 12. 10.
- 김영춘·최해범, 「보세공장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제12권 제3호, 2011. 8.
- 이명구, 「보세공장 운영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장외작업장을 중심으로」, 『한국관세학회지』, 제19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8. 12.
- 정재호·김태훈, 『주요국의 관세담보제도 실태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7. 11.
- 정재호·마정화·정경화,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8.
- 정재호·안덕근 『WTO 보조금협정에 적합한 조세재정지원정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2.
- 정재호·정재완, 『관세법 체계의 국제비교 연구-조세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1.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등 11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S1A0W6W2C5S1A0J5O8X1G7C0Q5E7](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S1A0W6W2C5S1A0J5O8X1G7C0Q5E7), 검색일자: 2022. 2. 16.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4&cntntsId=831>, 검색일자: 2022. 1. 7.
- 관세청 일본관세연구회, 『일본세관 연수원 교재 I』, 2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심-2020-전-0270[심판]),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search/search\\_inspect\\_view.jsp?log\\_docu\\_kind=%EC%8B%AC%ED%8C%90%EC%B2%AD%EA%B5%AC&log\\_taxitem\\_id=99&log\\_taxitem\\_nm=%EA%B8%B0%ED%83%80&log\\_weblog\\_searchModeUrl=search\\_inspect\\_view.jsp?log\\_docu\\_kind=%EC%8B%AC%ED%8C%90%EC%B2%AD%EA%B5%AC&search\\_Mode=total&log\\_taxitem\\_id=99](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search/search_inspect_view.jsp?log_docu_kind=%EC%8B%AC%ED%8C%90%EC%B2%AD%EA%B5%AC&log_taxitem_id=99&log_taxitem_nm=%EA%B8%B0%ED%83%80&log_weblog_searchModeUrl=search_inspect_view.jsp?log_docu_kind=%EC%8B%AC%ED%8C%90%EC%B2%AD%EA%B5%AC&search_Mode=total&log_taxitem_id=99), 검색일자: 2020. 4. 23.
- \_\_\_\_\_, (조심-2019-전-0136[심판]),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inspect\\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4&docu\\_no=464474&docu\\_kind=%EC%8B%AC%ED%8C%90&menu\\_gubun=mainTop100](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inspect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4&docu_no=464474&docu_kind=%EC%8B%AC%ED%8C%90&menu_gubun=mainTop100), 검색일자: 2022. 2. 16.
- 기획재정부, 「관세법」(시행 2010. 1. 1.) (법률 제9910호, 2010. 1. 1., 일부개정) 재정·개정 이유, 2010. 1. 1.
- 대만 「관세법」, 「보세공장관리규정」, 「관세법 시행규칙」, 「보세창고에서의 제조 및 기타작업에 대한 규정」
- 대만 국가법령센터,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C0000006>, 검색일자: 2022. 1. 10.
-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30년사. 공정무역 질서 확립 30년을 담다』, 2017. 9.
- 미국 연방 관세규정(19 CFR Part 19) 19 U.S.C.§ 1311
- 세계법제정보센터, 「인도 관세법」 번역본, 2019.
- 외교부, <https://www.mofa.go.kr/>, 최종 검색일자: 2021. 12. 29.
- \_\_\_\_\_, [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311253&srchFr=&srchTo=](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311253&srchFr=&srchTo=), 검색일자: 2021. 12. 28.
- \_\_\_\_\_, [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31125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31125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6, 검색일자: 2021. 12. 29.

- 외교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2001. 6. 28.
- 우리나라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 인도 「자가용 창고 허가규정」, 「관세법」, 「보세창고에서의 제조 및 기타작업에 대한 규정」
- 인도투자진흥청, <https://www.investindia.gov.in/bonded-manufacturing>, 검색일자: 2022. 1. 19.
- 일본 「관세법」, 「관세법 기본통달」, 「관세정률법」
- CBIC, “Notfn. No. 14/09-Cus., dated 19.2.2009 as amended by 123/09, 93/10, 40/11, 37/12, 40/12, 50/12, 4/13, 20/13, 5/15,” 2009. 19. 2.
- \_\_\_\_, “F.No.484/03/2015-LC(Pt)(undated version),” 2020. 10. 27.
- CBIC, <https://taxinformation.cbic.gov.in/content-page/explore-act>, 검색일자: 2022. 2. 4.
- CPT Single Window, <https://portal.sw.nat.gov.tw/PPL/index>, 검색일자: 2022. 2. 15.
- Forwarder kr: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10\\_1&wr\\_id=8028&device=pc](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10_1&wr_id=8028&device=pc), 검색일자: 2022. 2. 7.
- WCO, [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aspx](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aspx), 검색일자: 2022. 1. 10.
- WTO, “Kyoto Convention Guidelines To Specific Annex F Chapter 1 Inward processing,” 2000. 7.



관세연구 21-04  
주요국의 보세공장제도 비교연구

---

발 행 2021년 12월 31일  
저 자 정재현 · 김미정 · 노영예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주) 삼일기획  
인 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ISBN 979-11-6655-128-4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